

발행인: 서울특별시
 편집인: 홍보기획관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
 ☎ 731-6112

서울시보

선 람	기 관 의 장

제2687호 2006. 3. 2.(목)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자치법규

[규 칙]

- 제3479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4
- 제3480호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 일부개정규칙 4

※ 서울시보게재를 의뢰한 각급 기관에 알려드립니다.

서울시보 게재내용은 발행일에 서울시 사무자동화 및 서울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에 게재하고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보게재의뢰 및 편집문의 TEL. (02)731-6112
- 서울시보발간일은 매주 목요일이며 공휴일일때는 다음날 발행.
- 서울시보게재접수는 D-3일까지 접수하며, 전자문서나 디스켓 또는 e-mail : sibo2000@seoul.go.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휴일은 날짜산정에서 제외)

<접수마감>

월요일 14:00

- ※ 시보게재접수를 중복되지 않게 보내기 바랍니다.
(예, 시보를 발행한 후 접수되는 경우)
- ※ 공고번호 없이 접수되는 원고는 게재할 수 없습니다.



- ※ 중복된 공고(신문, 관보, 시보, 구보)로 귀중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합니다.
- ※ 서울시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면계속>

공 람									
--------	--	--	--	--	--	--	--	--	--



제3481호	서울특별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6
제3482호	서울특별시수도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6
제3483호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0

[입법예고]

제2006-312호	서울특별시119구급대및구조대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35
------------	----------------------------------	----

◆고 시

제2006- 6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	36
제2006- 68호	도시계획시설사업(자동차정류장, 도로)실시계획 변경	38
제2006- 69호	도시계획시설(인왕산도시자연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	40

◆공 고

제2006-320호	2006년도 제4차 건축물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결과	52
제2006-321호	대부업자 행정처분(직권등록취소)	53
제2006-322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자 행정처분	55
제2006-331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등록	55
제2006-334호	2006년 서울특별시 명예시민 추천	56
제2006-337호	측량업 신규등록	57
제2006-338호	자동차전용도로 변경	57
제2006-339호	회계관계공무원직인등록	58
제2006-342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 행정처분	58
제2006-343호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도로)사업 완료	59
제2006-348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등록 및 폐기	59
제2006-352호	지적측량업 신규등록	60
제2006-353호	지적측량업 소재지변경	60
제2006-354호	지적측량업 등록변경(지위승계)	60
제2006-363호	다단계판매업 등록변경 및 휴업신고	61

◆구고시

제2006- 8호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실시계획 변경인가(용산구)	62
제2006- 8호	금호제14주택재개발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성동구)	62
제2006- 11호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광진구)	65
제2006- 14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중랑구)	66
제2006- 15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및 세부조성계획)변경결정에 따른 지형도면승인(성북구)	66
제2006- 12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강북구)	69
제2006- 1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은평구)	70
제2006- 18호	천연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영천주택재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지형도면(서대문구)	74

제2006- 19호	도시계획시설사업(광장)실시계획 작성(서대문구)	76
제2006- 7호	도시계획시설사업(화물자동차정류장)실시계획 변경(시행자 변경)인가(양천구)	80
제2006-161호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강서구)	80
제2006- 10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공지)결정 및 지형도면작성(구로구)	85
제2006- 13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조성)실시계획 변경인가(동작구)	85
제2006- 16호	공용건축물 건축협의 및 도시계획시설(학교)실시계획변경인가(관악구)	88
제2006- 15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 변경인가(강남구)	89
제2006- 16호	도시계획사업(주차장)시행자 지정(변경)(강남구)	90
제2006- 9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지형도면 승인(송파구)	90
◆구공고		
제2006-109호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공사완료(광진구)	100
제2006- 99호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실시계획변경인가 서류공람(노원구)	100
제2006- 85호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양천구)	101
제2006-115호	천왕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내 건축허가제한(구로구)	102
제2006- 89호	상도제7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동작구)	102
제2006-141호	도시공원시설 관리위탁 사항(강동구)	105
◆사업소고시		
제2006- 30호,31호	하천점용허가(한강시민공원사업소)	106
◆사업소공고		
제2006- 1호	소방시설업 신규등록(성동소방서)	107
제2006- 3호	소방시설업 신규등록(마포소방서)	107
제2006- 2호	소방시설업 등록(영등포소방서)	107
제2006- 3,4호	소방시설업 신규등록(서초소방서)	108
◆기 타		
제2004- 9-3호	실시계획승인(변경)(국방부)	109
제2006- 3,4,5,6,7,8,9,10,11,12,13,14호	관인 폐기 및 재등록(서울광진경찰서)	110
제2006- 3,4,5,6,7,8,9,10,11,12,13,14,15,16,17,18,19호	관인 폐기 및 재등록(서울동작경찰서)	113

짜치법규

[규 칙]

◆ 서울특별시규칙 제3479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이명박 ㉠

2006년 3월 2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0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12조제6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사)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도에 관한 사항

제15조제3항중 제19호를 제20호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지역혁신협의회운영 등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한 자치단체 업무의 총괄

제18조제1항중 “공원과·조경과 및 민주공원조성추진반”을 “공원과 및 조경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조경과장은 지방농림부이사관 또는 지방임업서기관으로, 민주공원조성추진반장은 지방임업서기관으로 보한다.”를 “조경과장은 지방농림부이사관 또는 지방임업서기관으로 보한다.”로 하며, 동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19조제1항중 “대중교통과”를 “버스정책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대중교통과장”을 “버스정책과장”으로 하며, 동조제3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19조제4항중 “대중교통과장”을 “버스정책

과장”으로 하고, 동조제8항에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버스종합사령실 구축 및 운영관리
16. 무인감시카메라의 운영

제20조를 삭제한다.

규칙 제3481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부칙 제2항중 “제40조의 지방세연구소의 존속기한은 2007년 2월 28일까지로 하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등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한 자치단체업무의 총괄을 혁신분권담당관에서 산업지원과로 분장하고, 서울시립대학교의 부설연구소 중 한시적으로 운영해 온 지방세연구소를 상설화하는 한편,

나. 교통국의 조직개편에 따라 대중교통과를 버스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과별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며,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 서울특별시규칙 제3480호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이명박 ㉠

2006년 3월 2일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주관국의 여성가족정책관(청소년담당관)란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란 제2호를 삭제한다.

주 관 국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여성가족 정 책 관 (청소년 담당관)	1. 청소년위원회소관 청소년관계비영리 법인의 지도감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정관변경허가(목적·명칭 및 구를 달리하 는 사무소의 소재지변경 제외) 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다. 법인사무의 검사·감독	○「청소년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 독에 관한 규칙」 제6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0조의2제1항) ○「청소년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 독에 관한 규칙」 제7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0조의2제1항) ○「민법」 제37조 및 「청소년위원회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행 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0조 의2제1항)	구청장

별표 주관국의 환경국(대기과)란중 제1호자
목 및 환경국(수질과)란중 제1호차목을 각
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의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란중 제2호 및 제3호를 각
각 다음과 같이 한다.

주 관 국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환 경 국 (대기과)	자.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변경임명 신고의 수리	○「대기환경보전법」 제24조제1항(동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18호)	
환 경 국 (수질과)	차.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변경임명 신고의 수리	○「수질환경보전법」 제47조제1항(동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8호)	
푸른도시국 (자연 생태과)	2. 5만제곱미터(농지 및 초지의 조성을 위한 경우에는 2만 제곱미터)미만의 보전산지 전용허가·변경허가·신고수 리·협의, 용도변경 승인 및 허가취소 등 필요한 조치 3. 「산지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5만 제곱미터 미만의 보전산지 전용허가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 징수·감면 및 환급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 제 17조, 제20조, 제21조(동법 시행 령 제52조제4항제1,2호) ○「산지관리법」 제19조제3항 내지 제 5항, 제8항(동법 시행령 제52조제 4항제3호)	구청장 구청장

별표 주관국의 건설기획국(건설행정과)란중
제2호를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

란의 제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 관 국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건설기획국 (건설행정과)	3. 건설기계검사에 관한 다음의 사무 다. 검사에 불합격된 건설기계에 대한 정비명령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6항(동법 시 행령 제18조제3호)	구청장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중 환경국

(수질과)사무는 2006년 4월 1일부터 시
행한다.

② (사무재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의 개정규정에 의한 재위
임사무로서 그 처리절차가 진행중인 사
무는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리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관계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지도감
독에 관한 사무가 문화관광부에서 청소년
위원회로 그 소관이 변경되고, 「수질환경
보전법」개정으로 “환경관리인”이 “환경기
술인”으로 변경되었으며, 보존산지에 관한
사무중 산지관리사무의 근거법령이 「산림
법」에서 「산지관리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울특별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
한조례의 개정에 따라 종전에는 공영차고
지 사용허가기준을 공영차고지로부터 3킬
로미터 이내에 기·중점이 있는 운송사업
자로 제한하였던 것을 6킬로미터 이내로
확대하고, 공영차고지 해당권역을 지나는
노선을 운행하는 운송사업자도 포함되도
록 관련규정을 정비함.

◆ 서울특별시규칙 제3481호

서울특별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
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
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
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이 명 박 ㉠
2006년 3월 2일

서울특별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
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
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을 “서울특별시 공영
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2항중 “3km이내에 노선의 기·중점
이 있는 운송사업자”를 “6킬로미터 이내
에 노선의 기·중점이 있는 운송사업자와
공영차고지 해당권역을 지나는 노선을
운행하는 운송사업자”로 한다.

제1조중 “서울특별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

◆ 서울특별시규칙 제3482호

서울특별시수도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수도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
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이 명 박 ㉠
2006년 3월 2일

서울특별시수도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수도조례시행규칙”을 “서울
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단서중 “격월 또는 4월”을 “2
개월분(이하“2월분”이라 한다) 또는 12
개월분(이하“12월분”이라 한다)”로 한다.

제2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2월분 또는 12월분 검침 : 2월분 조정.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매월 조정할 수 있다.

제28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12월분의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는 경
우로서 전년도 월평균사용량 등으로 인정
조정 또는 계량기 고장으로 계량된 양이
정상사용량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조정한다.

1. 전년도사용량이 정상사용량인 경우에는 전년도 월평균사용량으로 한다.
2. 전년도사용량이 정상사용량이 아닌 경우로서 전전년도사용량이 정상사용량인 경우에는 전전년도 월평균사용량으로 한다.
3. 전년도 및 전전년도사용량이 없거나 전년도 및 전전년도사용량이 정상사용량이 아닌 경우에는 가정용 월평균사용량에 세대수를 곱한 양으로 조정한다.
4. 급수인원 및 급수세대수의 증·감으로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에 의해 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증·감 세대에 대하여 제3호의 방법으로 조정한다.

제29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중 “월정기검침분”을 각각 “월정기검침분(12월분의 사용량을 일괄계량하는 경우에는 “월정기고지분”으로 한다)”로 한다.

제6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8조(검사신청 및 검사기간) ① 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5호 서식(인터넷 신청은 제75의 2호 서식)에 의한 검사신청서를 상수도연구소장(이하 “연구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36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현장 시료 채취 등의 사유로 20일 이내 검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자와 협의하여 검사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2(서울특별시 감시항목) 조례 제3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감시항목의 수질기준, 검사대상 및 검사주기는 별표 8과 같으며, 검사방법은 별표 9와 같다.

제6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9조(수수료) ① 연구소장은 제6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당해 신청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료를 현장에서 채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1. 먹는물 또는 수처리제에 대한 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를 따른다.
2. 서울특별시 감시항목중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항목은 별표 10에서 정한 수수료를 따른다.

② 검사신청이 취소되고 그 취소가 당해 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기 납부한 수수료를 환부할 수 있다.

제70조제1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연구소장은 검사를 실시하고 각 호의 검사성적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조례 제36조제3항제1호의 사항에 관한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검사성적서를 교부한다.
2. 조례 제36조제3항제2호의 사항에 관한 수처리제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75의3호 서식에서 정한 검사성적서를 교부한다.
3. 조례 제36조의2제2항에 의한 서울특별시 감시항목에 대해서는 별지 제75의4호 서식에서 정한 검사성적서를 교부한다.

③ 연구소장은 제1항의 검사성적서 원본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별표 8 내지 별표 10 및 별지 제75호, 별지 제75의3호, 별지 제75의4호, 별지 제76호를 별첨과 같이 한다.

제1조중 “서울특별시수도조례”를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로 한다.

제8조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한다.
 제10조중 “건설산업기본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15조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건설산업기본법”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18조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관리법」”으로 한다.
 제19조중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62조중 “자연재해대책법”을 “「자연재해대책법」”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의 개정으로 가정용 수용가에 대한 1년주기 검침제도의 시범실시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요금조정 방법, 조정시기 및 세대분할 적용시기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먹는 물에 대한 체계적·전문적인 수질관리를 위한 검사기준·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 등에 대한 세부운영기준을 정함.

【별표 8】

서울특별시 감시항목의 수질기준, 검사주기 및 검사대상(제68조의2 관련)

(단위 : mg/L)

종 류	감시항목	수질기준	검사주기		검사대상
			분 기	연 간	
미생물 분 야 (10항목)	바이러스	TT ¹⁾		○	정수
	지아디아	TT ²⁾	○		"
	크립토포리디움	TT ³⁾	○		"
	분원성연쇄상구균	불검출/250 mL	○		"
	저온일반세균	500 CFU/mL이하	○		"
	살모넬라	불검출/250mL		○	"
	취겔라	불검출/250mL		○	"
	녹농균	불검출/250mL		○	"
	아황산환원혐기성 포자형성균	불검출/50mL	○		"
	레지오넬라	불검출/250mL		○	"
무기물 분 야 (9항목)	나트륨	200이하	○		"
	칼륨	12이하	○		"
	아질산성질소	1이하	○		"
	베릴륨	0.004이하	○		"
	몰리브덴	0.07이하	○		"

종 류	검사항목	수질기준	검사주기		검사대상
			분 기	연 간	
무기물 분 야 (9항목)	니켈	0.02이하		○	정수
	안티몬	0.02이하		○	"
	탈륨	0.002이하	○		"
	우라늄	0.015이하	○		"
유기물 분 야 (11항목)	클로로에탄	- ⁴⁾		○	"
	디(2-에틸헥실)아디페이트	0.08이하	○		"
	디(2-에틸헥실)프탈레이트	0.008이하	○		"
	1,4-디클로로벤젠	0.3이하	○		"
	모노클로로벤젠	0.3이하	○		"
	엠티비이(MTBE)	0.013이하	○		"
	마이크로시스틴	0.001이하		○	"
	벤조(a)피렌	0.0007이하		○	"
	1,2-디클로로에탄	0.03이하		○	"
	염화비닐	0.0003 이하		○	"
	스티렌	0.02 이하		○	"
소독부산물 분 야 (11항목)	포름알데하이드	0.9 이하	○		"
	브로모클로로아세토니트릴	- ⁴⁾	○		"
	모노클로로아세트산	0.02 이하	○		"
	모노브로모아세트산	0.06 이하	○		"
	디브로모아세트산		○		"
	디브로모클로로메탄	0.1 이하	○		"
	브로모디클로로메탄	0.06 이하	○		"
	브로모포름	0.1 이하		○	"
	2-클로로페놀	0.3 이하		○	"
	2,4-디클로로페놀	0.2 이하		○	"
	2,4,6-트리클로로페놀	0.2 이하		○	"
농약류 분 야 (25항목)	에틸렌 디브로마이드	0.0004 이하		○	"
	1,2-디클로로프로판	0.04 이하	○		"
	펜타클로로페놀	0.009 이하		○	"

종 류	검사항목	수질기준	검사주기		검사대상
			분 기	연 간	
농약류 분 야 (25항목)	엔도설판	0.0005이하	○		"
	알드린	0.0003이하	○		"
	디엘드린	0.0003이하	○		"
	시마진	0.002이하		○	"
	터부틸아진	0.007이하	○		"
	2,4-디(2,4-D)	0.03이하		○	"
	2,4-디비(2,4-DB)	0.09이하	○		"
	엠시피비(MCPB)	0.0001이하	○		"
	벤타존	0.3 이하	○		"
	카보푸란	0.007 이하		○	"
	페노브카브	0.03 이하	○		"
	알라클러	0.02 이하		○	"
	클로로탈로닐	0.05 이하		○	"
	엔드린	0.0006이하	○		"
	헵타클로	0.0003이하	○		"
	헵타클로 에폭사이드	0.0003이하	○		"
	메톨라클러	0.01이하	○		"
	이프로벤포스	0.008이하	○		"
	펜토에이트	0.0001이하	○		"
	메틸디메톤	0.0001 이하	○		"
이피엔(EPN)	0.006 이하	○		"	
디클로르보스	0.008 이하	○		"	

(주) TT는 정수처리에 관한 기준임
 1) 바이러스를 99.99%이상 제거 또는 불활성화, 2) 지아디아를 99.9%이상 제거 또는 불활성화, 3) 크립토스포리디움을 99%이상 제거, 4) 클로로에탄, 브로모클로로아세토니트릴 : 수질기준 지정유보

【별표 9】

서울특별시 감시항목의 검사방법(제68조의2 관련)

종 류	검 사 항 목	검 사 방 법
미생물 분 야 (10항목)	바이러스	바이러스표준시험방법(총배양성바이러스분석법)
	지아디아	원생동물표준시험방법(면역형광항체법)
	크립토스포리디움	원생동물표준시험방법(면역형광항체법)
	분원성연쇄상구균	막여과법
	저온일반세균	주입평판법
	살모넬라	막여과법
	슈겔라	막여과법
	녹농균	시험관법
	아황산환원협기성포자형성균	시험관법
	레지오넬라	막여과법
무기물 분 야 (9항목)	나트륨	원자 흡수 분광 광도법
	칼륨	원자 흡수 분광 광도법
	아질산성질소	이온 크로마토그래피
	베릴륨	유도 결합 플라즈마 질량 분석법
	몰리브덴	유도 결합 플라즈마 질량 분석법
	니켈	유도 결합 플라즈마 질량 분석법
	안티몬	유도 결합 플라즈마 질량 분석법
	탈륨	유도 결합 플라즈마 질량 분석법
	우라늄	유도 결합 플라즈마 질량 분석법
유기물 분 야 (11항목)	클로로에탄·	퍼지 트랩-기체 크로마토그래프/질량 분석법
	디(2-에틸헥실)아디페이트	액체-액체 추출-기체 크로마토그래프/질량 분석법
	디(2-에틸헥실)프탈레이트	액체-액체 추출-기체 크로마토그래프/질량 분석법
	1,4-디클로로벤젠	퍼지 트랩-기체 크로마토그래프/질량 분석법
	모노클로로벤젠	퍼지 트랩-기체 크로마토그래프/질량 분석법
	엠티비(MTBE)	퍼지 트랩-기체 크로마토그래프/질량 분석법
	마이크로시스틴	고체상추출-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벤조(a)피렌	고체상추출-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1,2-디클로로에탄	퍼지 트랩-기체 크로마토그래프/질량 분석법
	염화비닐	퍼지 트랩-기체 크로마토그래프/질량 분석법
	스티렌	퍼지 트랩-기체 크로마토그래프/질량 분석법

종 류	검 사 항 목	검 사 방 법
소독부산물 분 야 (11항목)	포름알데하이드	액체-액체 추출-기체 크로마토그래피
	브로모클로로아세트니트릴	액체-액체 추출-기체 크로마토그래프/질량 분석법
	모노클로로아세트산	액체-액체 추출-기체 크로마토그래프/질량 분석법
	모노브로모아세트산	액체-액체 추출-기체 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법
	디브로모아세트산	
	디브로모클로로메탄	퍼지 트랩-기체 크로마토그래프/질량 분석법
	브로모디클로로메탄	퍼지 트랩-기체 크로마토그래프/질량 분석법
	브로모포름	퍼지 트랩-기체 크로마토그래프/질량 분석법
	2-클로로페놀	액체-액체 추출-기체 크로마토그래프/질량 분석법
	2,4-디클로로페놀	액체-액체 추출-기체 크로마토그래프/질량 분석법
	2,4,6-트리클로로페놀	액체-액체 추출-기체 크로마토그래프/질량 분석법
농약류 분 야 (25항목)	에틸렌 디브로마이드	퍼지 트랩-기체 크로마토그래프/질량 분석법
	1,2-디클로로프로판	퍼지 트랩-기체 크로마토그래프/질량 분석법
	펜타클로로페놀	액체-액체 추출-기체 크로마토그래프/질량 분석법
	엔도설판	고체상 추출-기체 크로마토그래프/질량 분석법
	알드린	고체상 추출-기체 크로마토그래프/질량 분석법
	디엘드린	고체상 추출-기체 크로마토그래프/질량 분석법
	시마진	고체상 추출-기체 크로마토그래프/질량 분석법
	터부틸아진	고체상 추출-기체 크로마토그래프/질량 분석법
	2,4-디(2,4-D)	고체상 추출-액체 크로마토그래피
	2,4-디비(2,4-DB)	고체상 추출-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엠시피비(MCPB)	고체상 추출-액체 크로마토그래피
	벤타존	고체상 추출-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카보푸란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페노브카브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알라클러	고체상 추출-기체 크로마토그래프/질량 분석법
	클로로탈로닐	고체상 추출-기체 크로마토그래프/질량 분석법
	엔드린	고체상 추출-기체 크로마토그래프/질량 분석법
	헵타클로	고체상 추출-기체 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법
헵타클로 에폭사이드	고체상 추출-기체 크로마토그래프/질량 분석법	

종 류	검 사 항 목	검 사 방 법
농약류 분 야 (25항목)	메톨라클러	고체상 추출-기체 크로마토그래프/질량 분석법
	이프로벤포스	고체상 추출-기체 크로마토그래프/질량 분석법
	펜토에이트	고체상 추출-기체 크로마토그래프/질량 분석법
	메틸디메톤	고체상 추출-기체 크로마토그래프/질량 분석법
	이피엔(EPN)	고체상 추출-기체 크로마토그래프/질량 분석법
	디클로르보스	고체상 추출-기체 크로마토그래프/질량 분석법

※ 세부 검사방법은 상수도연구소장이 정한다.

【별표 10】

서울특별시 감시항목 수질검사 수수료(제69조제1항제2호 관련)

구 분	연 번	검 사 항 목	수수료(원)
미생물 분야 (3항목)	1	크립토스포리디움	461,800
	2	지아디아	
	3	레지오넬라	15,900
무기물 분야 (9항목)	4	나트륨	6,100
	5	칼륨	6,100
	6	아질산성질소	4,000
	7	베릴륨	6,600
	8	몰리브덴	6,600
	9	탈륨	6,600
	10	우라늄	6,600
	11	니켈	6,600
	12	안티몬	6,600
유기물 분야 (11항목)	13	클로로에탄	13,600
	14	디(2-에틸헥실)아디페이트	15,600
	15	디(2-에틸헥실)프탈레이트	15,600
	16	1,4-디클로로벤젠	13,600
	17	모노클로로벤젠	13,600
	18	엠티비이(MTBE)	13,600
	19	마이크로시스틴	15,600
	20	벤조(a)피렌	15,600

구 분	연 번	검 사 항 목	수수료(원)
유기물 분야 (11항목)	21	1,2-디클로로에탄	13,600
	22	염화비닐	13,600
	23	스티렌	13,600
소독부산물 분 야 (11항목)	24	포름알데하이드	21,400
	25	브로모클로로아세트니트릴	21,400
	26	모노클로로아세트산	29,200
	27	모노브로모아세트산	29,200
	28	디브로모아세트산	29,200
	29	디브로모클로로메탄	19,600
	30	브로모디클로로메탄	19,600
	31	브로모포름	19,600
	32	2-클로로페놀	15,600
	33	2,4-디클로로페놀	15,600
	34	2,4,6-트리클로로페놀	15,600
농약류 분야 (25항목)	35	에틸렌디브로마이드	13,600
	36	1,2-디클로로프로판	13,600
	37	헵타클로로페놀	15,600
	38	엔도설펜	15,600
	39	알드린	15,600
	40	디엘드린	15,600
	41	엔드린	15,600
	42	헵타클로	15,600
	43	헵타클로-에폭사이드	15,600
	44	이프로벤포스	15,600
	45	이피엔(EPN)	15,600
	46	펜토에이트	15,600
	47	메틸디메톤	15,600
	48	디클로로르보스	15,600
	49	터부틸아진	15,600
	50	엠시피비(MCPB)	15,700
	51	벤타존	15,700

구 분	연 번	검 사 항 목	수수료(원)
농약류 분야 (25항목)	52	페노부카브	15,700
	53	클로로탈로닐	15,600
	54	2,4-디(2,4-D)	15,700
	55	시마진	15,600
	56	카보푸란	15,700
	57	메톨라클러	15,600
	58	2,4-디비(2,4-DB)	15,700
	59	알라클러	15,600

【별지 제75호 서식】 (앞면)

먹는물, 수처리제 검사 신청서		처리기간	
		20일	

1. 신청인

① 법인 또는 기관명			
② 대표자(성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 소	(전화번호 :)		

2. 검체내역

⑤ 검 체 명			
⑥ 검사목적(용도)			
⑦ 검체채취방법	(용기 : , 용량 :)		
⑧ 검사의뢰항목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36조, 제36조의2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상수도연구소장 귀하

〈첨 부〉 1) 검체(시료)	수수료
	뒷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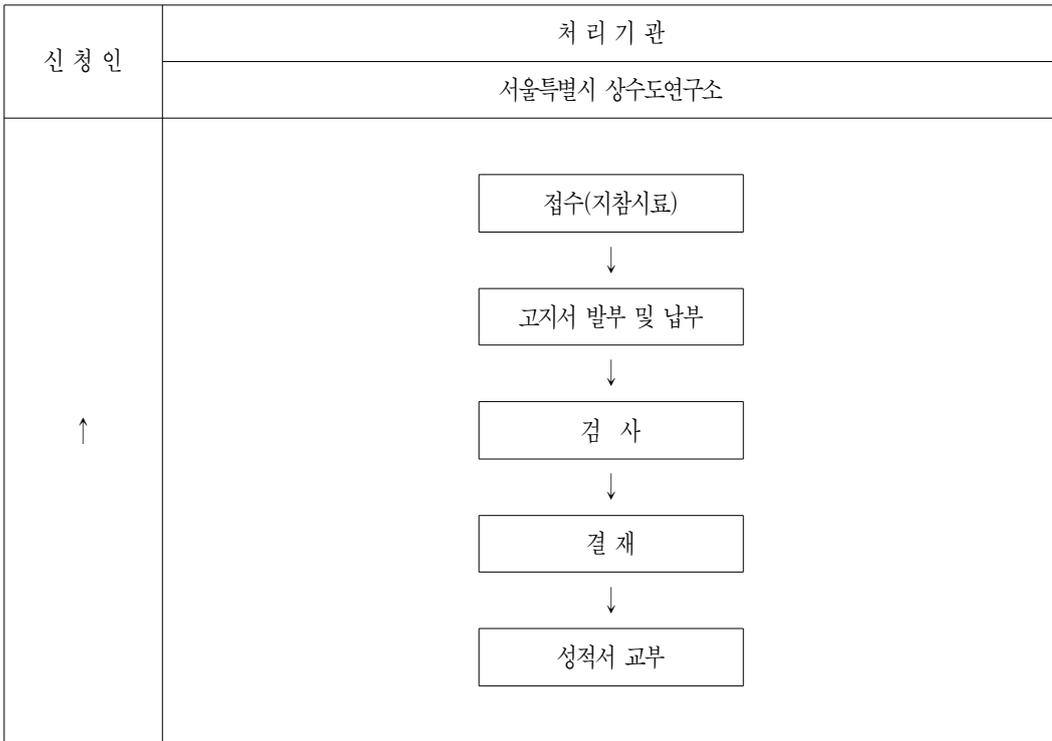
(뒷면)

수 수 료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또는 검사기관이 정한 수수료
-------	---------------------------------

〈작성요령〉

1. ⑦ 검체채취방법 : 지참시료 또는 검사자 현장채취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2. ⑧ 검사의회항목 : 검사목적에 따라 검사항목을 기재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75의3호 서식】

수처리제 검사 성적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3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수처리제 검사성적서를 교부합니다.

1. 검체내용

접수번호		접수일자	
품 명		검사항목	
의뢰기관		시험방법	

2. 검사결과

항목	기 준	검사결과	항 목	기 준	검사결과
비 고	본 성적서는 당해 검사시료에 한하며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포장 등에도 이를 표시할 수 없다.				

【별지 제75의4호 서식】

서울특별시 감시항목 검사 성적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36조의2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검사성적서를 교부합니다.

1. 검체내용

시 료 명		의뢰근거		접수번호	
채수장소		채수일시		접수일자	
채수방법		검사목적		검사완료일자	

2. 검사결과

가. 미생물에 관한 항목

검 사 항 목	기 준	검 사 결 과	검 사 항 목	기 준	검 사 결 과
1. 분원성 연쇄상구균	불검출/250mL		5. 아황산환원 혐기성포자형성균	불검출/50mL	
2. 녹농균	불검출/250mL		6. 저온일반세균	500CFU/mL이하	
3. 살모넬라	불검출/250mL		7. 레지오넬라	불검출/250mL	
4. 쉬겔라	불검출/250mL				

나. 무기물질에 관한 항목

검 사 항 목	기준(mg/L이하)	검 사 결 과	검 사 항 목	기준(mg/L이하)	검 사 결 과
1. 니켈(Ni)	0.02		6. 베릴륨(Be)	0.004	
2. 칼륨(K)	12		7. 몰리브덴(Mo)	0.07	
3. 나트륨(Na)	200		8. 텔륨(Tl)	0.002	
4. 안티몬(Sb)	0.02		9. 우라늄(U)	0.015	
5. 아질산성질소	1				

다.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에 관한 항목

검 사 항 목	기준(mg/L이하)	검사결과	검 사 항 목	기준(mg/L이하)	검사결과
1. 벤조(a)피렌	0.0007		19. 시마진	0.002	
2. 1,2-디클로로에탄	0.03		20. 2,4-디(2,4-D)	0.03	
3. 염화비닐	0.0003		21. 알라클러	0.02	
4. 스티렌	0.02		22. 클로로탈로닐	0.05	
5. 마이크로시스틴	0.001		23. 헵타클로로페놀	0.009	
6. 클로로에탄	-		24. 엔도설판	0.00005	
7. 디(2-에틸헥실)아디페이트	0.08		25. 알드린	0.00003	
8. 디(2-에틸헥실)프탈레이트	0.008		26. 디엘드린	0.00003	
9. 1,4-디클로로벤젠	0.3		27. 엔드린	0.0006	
10. 모노클로로벤젠	0.3		28. 헵타클로	0.00003	
11. 엠티비이(MTBE)	0.013		29. 헵타클로에폭사이드	0.00003	
12. 엠시피비(MCPB)	0.0001		30. 1,2-디클로로프로판	0.04	
13. 메톨라클로	0.01		31. 이프로벤포스	0.008	
14. 2,4-디비(2,4-DB)	0.09		32. 이피엔(EPN)	0.006	
15. 벤타존	0.3		33. 펜토에이트	0.0001	
16. 페노브카브	0.03		34. 메틸디메톤	0.0001	
17. 에틸렌 디브로마이드	0.0004		35. 디클로르보스	0.008	
18. 카보푸란	0.007		36. 터부틸아진	0.007	

라. 소독부산물질에 관한 항목

검 사 항 목	기준(mg/L이하)	검사결과	검 사 항 목	기준(mg/L이하)	검사결과
1. 모노브로모 아세트산	0.06		7. 디브로모 클로로메탄	0.1	
2. 디브로모 아세트산			8. 브로모 디클로로메탄	0.06	
3. 모노클로로 아세트산	0.02		9. 브로모포름	0.1	
4. 2-클로로 페놀	0.3		10. 브로모클로로 아세토니트릴	-	
5. 2,4-디클로로 페놀	0.2		11. 포름 알데하이드	0.9	
6. 2,4,6-트리클로로페놀	0.2				

◆ 서울특별시규칙 제3483호

서울특별시의회용소방대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의회용소방대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이명박 ㉠

2006년 3월 2일

서울특별시의회용소방대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의회용소방대설치조례시행규칙”을 “서울특별시의회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서울특별시의회용소방대설치조례”를 “서울특별시의회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중 “별표 1”을 “별도 1”로 한다.

제4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주민등록등본 1통

제5조제3항중 “대원이 면직 또는 해임되었을 때에는”을 “대원이 퇴직하거나 면직 또는 해임된 때에는”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복제) ① 조례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원의 복제의 제식은 별표 3과 같다.

② 별표 3의 규정 외에 복제의 제식에 관한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소방방재본부장이 정한다.

제8조의2 내지 제8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장학금 지급기준) ① 조례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1. 대원으로서의 복무기간이 3년 이상일 것
- 2. 동일호적에 있는 자녀일 것(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이혼한 여성 의용소방대원의 자녀를 포함한다)

② 장학금 지급대상자(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의 수는 각 소방서별로 소방서장이 소속 대원 총수의 100분의 5이하의 범위 안에서 당해 관할구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장학금의 금액은 1년간의 공납금으로 하고, 그 지급은 1회에 한한다.

④ 장학생을 선발하는 때에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거나, 이미 이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의3(장학금 지급절차) ①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모든 서류를 갖추어 소속 의용소방대장에게 장학생 선발신청을 하여야 한다.

- 1. 별지 제9호서식의 장학생 선발신청서
- 2. 주민등록등본 등 대원의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3. 자녀의 재학증명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의용소방대장은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생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범위 안에서 후보자를 선정하여 다음 각호의 모든 서류를 갖추어 소속 소방서장에게 선발신청을 하여야 한다.

- 1. 별지 제10호서식의 장학생후보자 추천서
- 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발신청을 받은 소방서장은 다음 각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하되, 매년 1학기 개시후 2월 이내에 선발결정하여야 한다.

- 1. 대원의 공로
- 2. 대원의 학비부담능력
- 3. 대원의 상훈 수상 경력
- 4. 대원의 복무기간
- 5. 장학생 후보자의 품행
- 6. 그 밖에 대원의 업무수행에 모범이 되는 사항으로서 소방서장이 인정하는 기준

④ 소방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결정한 때에는 의용소방대장·장학생 및 학교장에게 각각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장학생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장학금 지급신청서를 소속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소방서장은 장학생이 불가항력적인 사유없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선발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순위자를 선발할 수 있다.

제8조의4(장학금 지급방법) ① 장학금은 분기별로 나누어 지급하되, 소방서장이 분기개시 후 2월 이내에 장학생이 재학중인 학교장에게 지급한다.

② 서울특별시장은 장학생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 내지 제1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도 1 및 별도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도 3 내지 별도 8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①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종전의 제복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제복·기 및 표지는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고,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제복 등이 지급될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의회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2005. 11. 10)으로 모범 의용소방대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동 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지급기준·지급절차 및 지급방법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의용소방대원의 복제를 활동에 편리한 재질과 현대적 감각에 적합한 디자인 및 색상으로 개선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사기 및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함(제8조의2제1항).

- 의용소방대원으로서의 복무기간이 3년 이상일 것

- 동일호적에 있는 자녀일 것

나.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수는 각 소방서별로 소방서장이 소속 의용소방대원수의 100분의 5이하의 범위안에서 당해 관할구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제8조의2제2항).

다. 장학금은 1년간의 공납금으로 하고, 지급은 1회에 한하도록 함(제8조의2제3항).

라.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의용소방대장에게 제출하고, 의용소방대장은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범위안에서 후보자를 선정하여 소속 소방서장에게 추천하도록 함(제8조의3제1항 및 제2항).

마.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공로·복무기간 및 학비부담능력 등의 심사기준에 따라 매년 1학기 개시후 2월 이내에 장학생을 선발하도록 함(제8조의3제3항).

바. 의용소방대원의 제복의 형상·제식 및 재질 등을 개선함(별표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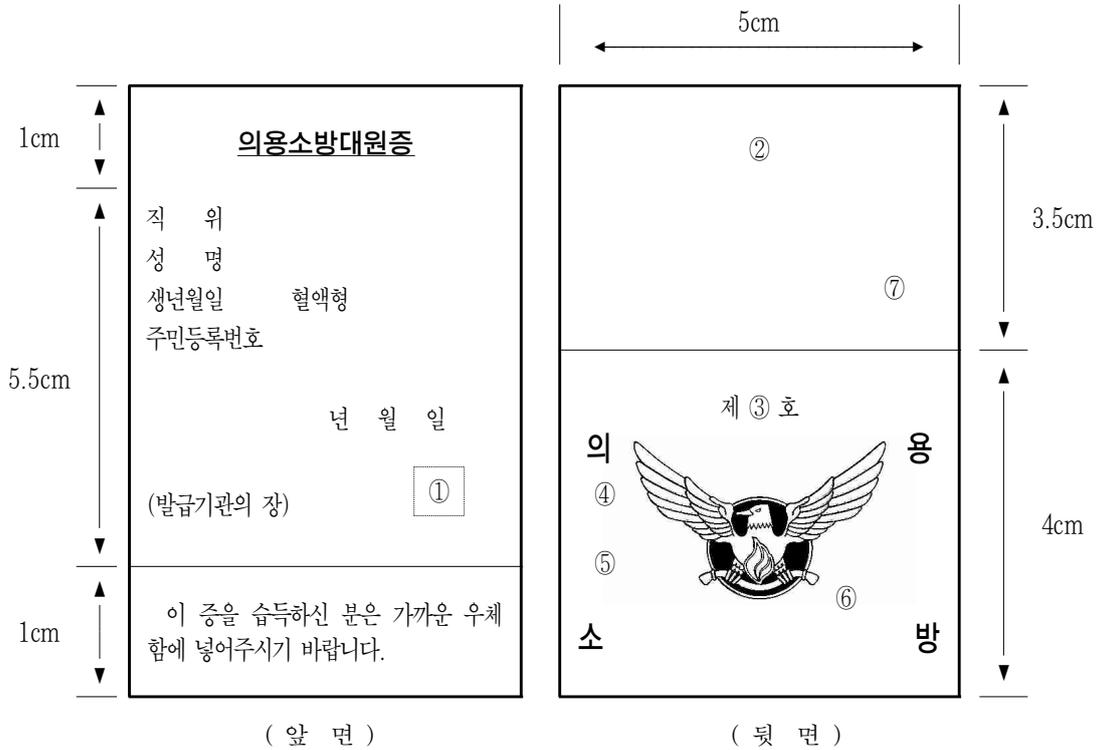
【별표 2】

신 분 증 명 서(제5조제1항제1호관련)

1. 제식

- 가. 신분증의 용지는 백색으로 하고, 지질은 인쇄용지 190g/m²으로 한다.
- 나. 신분증의 크기는 가로 5cm×세로 7.5cm로 한다.
- 다. 뒷면 사진첨부란 밑 전면에 1.5mm의 얇은 연두색 문자로 “서울특별시의회용소방”을 중앙부분에 금색으로 의용소방대 “모표”를 인쇄한다.
- 라. 뒷면 사진첨부란 밑의 모서리에 녹색으로 “의용소방”을 인쇄한다.(글씨크기 가로 0.8cm×세로 5cm×굵기 1mm)
- 마. 신분증과 발급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전일 6월이내에 촬영한 것으로서 크기는 가로 5cm×세로 3.5cm로 한다.
- 바. 신분증은 피브이씨(PVC) 또는 비닐지로 완전 밀착 포장하여 발급한다.

2. 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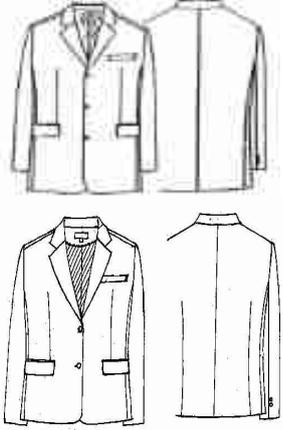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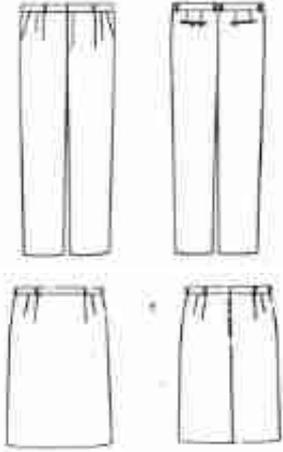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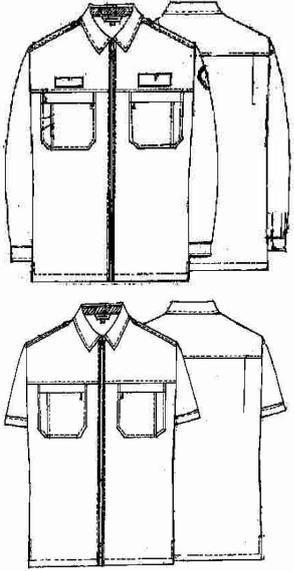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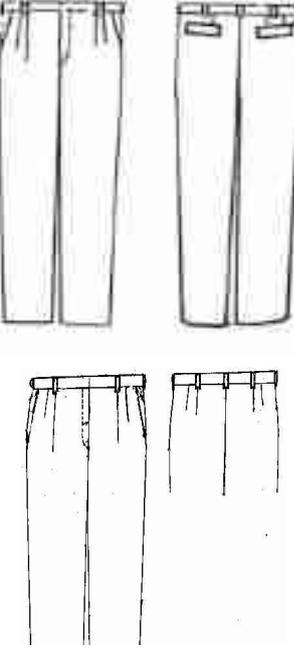
- ※ 비고
- ① 발급기관의 장의 직인
 - ② 사진(5cm×3.5cm)
 - ③ 신분증 번호
 - ④ 소속(○○의용소방대)
 - ⑤ 성명
 - ⑥ 발급기관명
 - ⑦ 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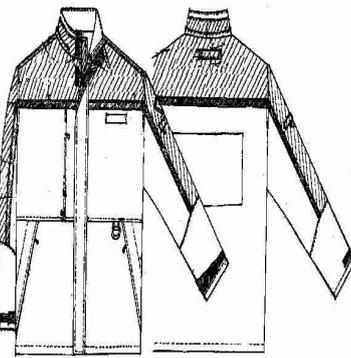
【별표 3】

복 제(제6조관련)

1. 제복

구분	형상	제식	재질 및 색상
정복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남자정복은 앞여밈을 3버튼으로 하고, 여자정복은 2버튼으로 한다.(소매단추는 남자 3개, 여자 2개씩으로 한다.) 2. 뒤등판은 트임이 없이 통으로 한다. 3. 남자정복의 흉부 좌우 안쪽에 입술주머니를 낸다. 4. 착용자 좌측 흉부에 하꼬주머니를 내고 허리부분 좌우에 후다주머니를 낸다. 5. 흰색와이셔츠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질 폴리에스테르/모(P/W) 40/60 2. 색상 - 청회색 - 색도(KS A 0062-2003) : 색상6.0PB(남색) 명도2.6/채도1.0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남자하의는 긴바지 형태로 하고, 여자하의는 스커트형태로 한다. 2. 바지앞면의 좌우측면에 사선으로 옆주머니를 낸다. 3. 바지허리 앞면의 좌우에 주름을 2개씩 잡아준다. 4. 바지뒷면의 좌우 둔부에 입술주머니를 내고 단추를 단다. 5. 스커트는 주름형태의 뒤중앙여밈으로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 색도KS A 0062-2003 : 한국산업규격(KS규격), '색의3속성에 의한 표시방법'을 2003년 최종개정된 것을 말함

구분	형상	제식	재질 및 색상
기 동 복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깃은 와이셔츠식(안쪽배색처리)으로 하며, 여밈은 앞몸판 중앙에 지퍼로 한다. 2. 동복은 긴소매, 하복은 반소매로 하고, 동복의 소매끝은 카우스식으로 하며, 소매 끝에 각각 2개의 단추를 단다. 3. 흉부 좌우에 겹붙임주머니를 달고 주머니윗부분에 지퍼를 달아준다. 4. 몸판 양옆선 아래쪽에 트임을 준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기동복 폴리에스테르/레이온 (P/R)65/35 - 동기동복 폴리에스테르/모 (P/W) 50/50 2. 색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의는 긴바지 형태로 한다. 2. 바지앞면의 좌우측면에 사선으로 옆주머니를 낸다. 3. 바지허리앞면의 좌우에 주름을 2개씩 잡아 준다. 4. 뒷면 좌우 둔부에 각각지퍼형 입술주머니를 낸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색상 : 옅은 청회색 - 색도 (KS A 0062-2003) : 색상5.3PB(남색) 명도5.6/채도3.1 ○ 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색상 : 짙은 청회색 - 색도(KS A 0062-2003) : 색상7.0PB(남색) 명도2.8/채도1.5

구분	형상	제식	재질 및 색상
조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깃은 스탠드카라형으로 한다. 2. 여밈은 앞몸판중앙에 지퍼형으로 한다. 3. 아래주머니는 좌우양쪽에 사진으로 지퍼처리한다. 4. 앞뒤 몸판좌우에 반사지로 배색한다. 5. 좌우옆몸판에 지퍼를 달고 메쉬안감 처리를 한다. 6. 뒤등판에 은색반사체로 “의용소방대”와 “서울”을 프린트한다. 7. 안감은 통풍성있게 망사로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질 폴리에스테르 100 2. 색상 - 걸감 : 진곤색 (색도 KS A 0062-2003) : 색상7.2PB(남색) 명도2.2/채도1.6 - 배색 : 형광녹색 (색도 KS A 0062-2003) : 색상 2.3GY(연두) 명도7.5/채도7.3
방한복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깃은 스탠드카라형으로 한다. 2. 여밈은 앞몸판중앙에 지퍼형으로 하며, 지퍼끝까지 바람막이를 달아주고 벨크로테이프로 여밀수 있게 한다. 3. 착용자의 우측흉부에 세로로 주머니를 내어 지퍼처리한다. 4. 아래주머니는 사진으로 내고 지퍼처리한다. 5. 앞몸판과 뒤등판 및 소매끝부분에 반사지로 배색한다. 6. 후드는 탈부착형으로 카라뒤 목선에 지퍼로 연결한다. 7. 내피는 긴소매의 탈부착형태로 한다. 8. 뒤등판에 은색반사체로 “의용소방대”와 “서울”을 프린트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질 폴리에스테르 100 2. 색상 - 걸감 : 진곤색 (색도 KS A 0062-2003) : 색상7.2PB(남색) 명도2.2/채도1.6 - 배색 : 형광녹색 (색도 KS A 0062-2003) : 색상2.3GY(연두) 명도7.5/채도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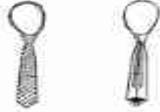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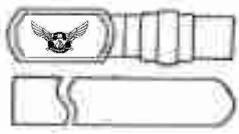
2. 모자			
구분	형상	제식	재질 및 색상
남자 정모	 1. 의용소방대장 이상  2. 지대장·부대장 	1. 천정비닐호스는 천정표면이 곡선화 되도록 하고, 이음선은 비닐호스를 사용한다. 2. 모자테의 바깥에는 주름테를 두르고 안쪽에는 비닐 땀받이를 붙인다. 3. 주름테 양쪽에 금색단추를 달고 금선턱끈을 넣는다. 4. 동테상단부위에 원형유지를 위하여 철심을 보강하고 레자로 봉합한다. 5. 모자중심선을 기준으로 뒷변은 겹감과 유사한 색상의 망사직으로 한다. 6. 지대장이상 차양의 직위별 월계수 장식은 금색자수로 한다. 가. 의용소방대장이상 월계수잎16매(좌우 각 8매) 나. 지대장 월계수잎14매(좌우 각 7매)	1. 카바 : 하정복지 겹감용 2. 차양 : 흑색멜튼지
여자 정모		1. 모자안 망사심은 원형을 유지하도록 고루 봉제한다. 2. 땀받이는 머리둘레 솔기가 갖추어지게 돌려 박는다. 3. 주름테 양쪽에 귀단추를 달고 금선턱끈을 넣는다. 4. 지대장이상 차양의 월계수 장식은 금속판으로 한다.(월계수잎은 남자정모와 동일)	하정복지 겹감용
기동모		1. 모자 전면 안쪽에 보강재를 접착하여 앞면을 세운다. 2. 천정에 통기용 구멍 4개를 내고 아이렛 처리한다. 3. 차양은 주머니식으로 하며 차양 끝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2선을 누빈다. 4. 챙길이는 8cm로 한다. 5. 여자의용소방대원 기동모는 남자의 것과 같이한다.	1. 재질 : 하기동복 하의재질 2. 색상 : 하기동복 하의색상

3. 표장·계급장 등 부착물				
구분	형상	제식	재질 및 색상	
직 위 표 장	서울의용소방대연합회장		1터빈모양 4개와 새매날개 3개로 하고 전체크기를 가로 91mm, 세로 25mm로 한다.	1. 금속재의 경우 - 황동판에 니켈금색도금을 하고 새매날개 바탕은 흑색에 폭시 처리 2. 지수의 경우 - 전체크기 : 남자 (가로 10.5cm, 세로 4.5cm), 여자(가로 8.5cm, 세로 4cm)로 하되, 여자의 경우 가로크기 조정 가능 - 색상 : 바탕은 기동복 하의색상, 직위표장은 황색비스코스레이온사(120데니아) - 가공 : 배면에 폴리에스테르/면(P/C) 심지(고밀도)를 접착
	의용소방대장		터빈모양 4개와 새매날개 1개로 하고 전체크기를 가로 82mm, 세로 25mm로 한다.	
	부대장		터빈모양 3개와 새매날개 1개로 하고 전체크기를 가로 63mm, 세로 25mm로 한다.	
	부장 지대장		터빈모양 2개와 새매날개 1개로 하고 전체크기를 가로 44mm, 세로 25mm로 한다.	
	반장		1. 전체크기 - 가로 25mm, 세로 25mm 2. 터빈크기 - 외경 19mm의 정육각형 3. 태극문양크기 - 지름 7mm 4. 측면에 2mm를 뺀 후 폭 4mm 새매날개 1개를 부착한다.	
모자 표장	1. 정장		1. 정모용 - 전체크기 : 가로 78mm, 세로 50mm - 태양크기 : 원외경 32mm - 불꽃크기 : 가로 8mm, 세로 12mm - 호스수평길이 : 37mm - 단, 여자정모용의 크기는 기동모용과 같다.	1. 정장 - 황동판에 24k금도금하고 태양부분은 적색에 폭시 처리 2. 약장 - 새매와 관창부분은 황색실, 태양부분은 적색실의 비스코스레이온사로 하되, 햇불은 금사로 지수처리
	2. 약장		2. 기동모용 - 전체크기 : 가로 53mm, 세로 35mm - 태양크기 : 원외경 22mm - 불꽃크기 : 가로 6mm, 세로 9mm - 호스수평길이 : 25mm	

구 분	형 상	제 식	재질 및 색상
지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크기 : 가로 53mm, 세로 53mm - 원모양크기 : 직경 30mm - 불꽃모양크기 : 가로 12mm, 세로 18mm - 무궁화꽃모양 : 가로 24mm, 세로 8mm - 길이 24mm의 지휘봉 2개 교차 	황동판에 24k 금도금
소 매 표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크기 : 가로 97mm, 세로 89mm - 리본크기 : 수평길이 87mm, 폭 10mm - 리본안에 "의소대 VOLUNTEER FIRE" 표기 - 불꽃크기 : 가로 22mm, 세로 32mm - 불꽃받침대 : 가로 41mm, 세로 29mm - 가로 34mm, 세로 27mm의 해태 두상을 불꽃을 중심으로 좌우대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바탕 : 진청색(곤색)의 옥스퍼드트월지 2. 비스코스레이온사(120테니아)로 자수 - 백색실 : 영문글자 - 적색실 : 리본모양 - 황색실 : 해태 두상, 햇불, 햇불받침대, 테두리선 - 흑색실 : 리본테두리 및 해태, 햇불의 형상표시용
뺃 지		- 태양외경 9mm의 모자표장 축소판으로 한다.	황동판에 24k 금도금하고, 태양부분은 적색 에폭시 처리
직위표	 <p>(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크기 : 가로 30mm, 세로 15mm - 글씨 : 고딕체 - 종류 : 대장, 부대장, 지대장, 부장, 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탕 : 적색의 옥스퍼드 트월지 - 글씨 : 백색의 비스코스레이온사(120테니아)로 자수처리 - 테두리 : 진청색(곤색)으로 마감

구분	형상	제식	재질 및 색상
가슴 표장	21년이상 근무		- 전체크기 : 가로 81mm, 세로 43mm - 불꽃모양 5개(불꽃과 새매날개 가로 81mm, 세로 28mm) - 불꽃크기 : 가로 9mm, 세로 14mm
	15년이상 20년미만 근무		- 전체크기 : 가로 84mm, 세로 31mm - 불꽃모양 4개(불꽃과 새매날개 가로 84mm, 세로 17mm) - 불꽃크기 : 가로 10mm, 세로 15mm
	10년이상 15년미만 근무		- 전체크기 : 가로 74mm, 세로 31mm - 불꽃모양 3개(불꽃과 새매날개 가로 74mm, 세로 17mm) - 불꽃크기 : 가로 10mm, 세로 15mm
	5년이상 10년미만 근무		- 전체크기 : 가로 70mm, 세로 31mm - 불꽃모양 2개(불꽃과 새매날개 가로 64mm, 세로 17mm) - 불꽃크기 : 가로 10mm, 세로 15mm
	입대후 5년미만 근무		- 전체크기 : 가로 70mm, 세로 31mm • 글씨부분 : 가로 70mm, 세로 14mm (글씨는 "VOLUNTEER FIRE"로 표기) - 불꽃모양 1개(불꽃과 새매날개 가로 57mm, 세로 17mm) - 불꽃크기 : 가로 10mm, 세로 15mm

1. 금속재의 경우
 황동판에 24k 금도금
 (글씨바탕은 적색에
 흑시처리)
2. 지수의 경우
 - 와펜전체크기 :
 가로95cm, 세로50cm
 - 바탕재질 : 기동복상의
 색상, 조끼, 방한복 색상
 - 가공 : 배면에 폴리에스
 테르/면(P/C) 심지(고밀
 도)를 접착
 - 황색실 : 햇불, 새매날개
 - 적색실 : 글씨바탕
 - 백색실 : 영문글씨

4. 부속물			
구분	형상	제식	재질 및 색상
넥타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퍼식 넥타이로 한다. 2. 걸감과 심의 재단은 정바이어스로 한다. 3. 넥타이무늬는 스트라이프 처리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폴리에스테르원단 선염처리 2. 진회색과 연분홍색 혼합색상
넥타이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중 집게형으로 한다. 2. 모자표장(정장)의 태양부분 원외경 32mm를 12mm로 축소한 모양으로 한다. 3. 핀길이 55mm, 핀너비 6mm(3등분) 두께 1.2mm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황동판에 24K금도금 2. 태양부분은 적색 에폭시처리(태양원외각부분은 금색)
요대 및 버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요대는 폭 30mm, 길이 110mm정도로 한다. 2. 버클은 중앙에 모자표장 도안을 삽입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요대는 검정가죽으로 한다. 2. 버클은 검정색에 폭시바탕에 금색테두리, 금색 모자표장으로 한다.
금장 단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크기를 중형(지름21mm), 소형(지름15mm)으로 구분 한다. 2. 중앙에 모자표장 도안을 삽입한다. 3. 단추 사용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형 : 정복상의앞 - 소형 : 정복견장, 소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속재질 2. 바탕은 검정색, 테두리와 모자표장은 금색
이름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체크기 : 가로 80mm, 세로 25mm (소속·직위부분 : 세로 8mm, 이름부분 : 세로 17mm) 2. 글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복용 : 고딕체 - 기동복용 : 명조체 3. 정복용의 뒷면은 옷핀형태로 고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복용은 필름에 칼라프린팅 후 에폭시 처리 2. 기동복용은 폴리에스테르의 재질로 재직하여 와펜지수처리 3. 색상은 소속·직위부분은 적색바탕에 백색글씨, 이름부분은 살구색바탕에 흑색글씨
등판 표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끼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씨전체의 크기 : 가로 200mm, 세로 118mm·의용소방대 : 세로 58mm • 서울 : 세로 45mm • 글씨간격 의용소방대 : 10mm 서울 : 15mm 2. 방한복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씨전체의 크기 : 가로 285mm, 세로 160mm • 의용소방대 : 세로 80mm • 서울 : 세로 60mm • 글씨간격 : 15mm 	은색 반사체 프린트

5. 제복별 부착물의 부착위치

구분	부착물의 종류	부 착 위 치
정 복	직위표장(금속재)	각 직위표장 중앙이 어깨끝에서 어깨선의 1/3 위치가 되도록 부착
	가슴표장(금속재)	앞가슴 좌측 하꼬주머니 상단
	지휘장(금속재)	앞가슴 좌측 하꼬주머니 하단
	이름표(펠름재질)	앞가슴 우측(가슴표장과 동일높이)
기동복	직위표장(자수)	견장(길이 11cm, 폭 5cm의 견장지에 자수) 단. 여자용은 길이 8.5cm, 폭 4cm의 견장지에 자수)
	가슴표장(자수)	앞가슴 좌측 상단절개선 5mm위 중앙
	이름표(자수)	앞가슴 우측 상단절개선 5mm위 중앙
	소매표장(자수)	좌측팔 어깨끝에서 6cm아래
	시·도마크(자수)	우측팔 어깨끝에서 6cm아래
조 끼	가슴표장(자수)	앞가슴 좌측 상단 절개선 5mm위 중앙
	직위표(자수)	앞가슴 우측 상단 절개선 5mm위 중앙
	등판표시(은색반사체)	뒷몸판 중앙절개선 하단 4cm아래
방한복	가슴표장(자수)	앞가슴 좌측 반사테이프 하단 1cm 중앙
	직위표(자수)	앞가슴 우측 반사테이프 하단 1cm 중앙
	소매표장(자수)	좌측팔 어깨끝에서 6cm아래
	등판표시(은색반사체)	뒷몸판 반사테이프 하단 4cm아래

[별지 제9호서식]

장 학생 선발 신청서

1. 인적사항

보 호 자		장 학 생	
소 속		학 교 명	
주 소		주 소	
성 명	한글:	학 년	
	한자:		
주민등록번호		성 명	한글: (남·여)
의용소방 대원경력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한자:
상훈경력(5년이내)		주민등록번호	
공사상 현황		보호자와의 관계	

2. 공적개요

3. 보호자 재산상황

부 동 산	동 산	수 입	기타가족수입	비 고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서울특별시의회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 선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성명

인

○○○소방서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의용소방대자녀장학생 후보자추천서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도 장학생 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추천합니다.

연번	학 교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주 소

년 월 일

○○소방서의용소방대장(인)

○○○소방서장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장학금 지급신청서

주 소 :
 학교명 : 학 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 본인은 년도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보호자 주소 :
 성명 : 인 신청인과의 관계

○○소방서장 귀하

[별지 제12호서식]

장 학 증 서

학교 학년 반
 성명 ○ ○ ○

위 학생은 학년도 의용소방대자녀장학생으로 선정되었기, 본 증서를 수여하고 장학금을 지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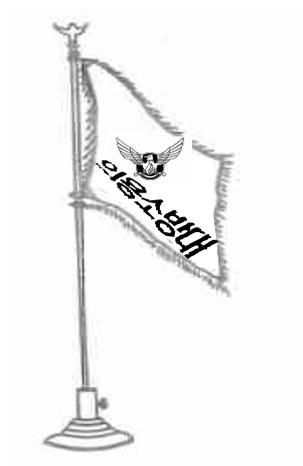
년 월 일

서울 특별 시 장

[별도 1]

의용소방대 기

1. 도안



2. 깃발

가. 규격

- (1) 기: 가로 110cm, 세로 75cm
- (2) 휘장: 가로 65cm, 세로 31cm
- (3) 수실: 길이 8cm

나. 색상

- (1) 바탕 : 진청색
- (2) 휘장 : 황금색
- (3) 수실 : 황금색
- (4) 글씨 : 은백색
- (5) 재질 : 우단
- (6) 휘장은 금사자수로 하되, 윤곽선은 검정색실로 처리한다.

3. 깃대

가. 규격

- (1) 무궁화깃봉 : 지름 6cm
- (2) 깃대 : 길이 180cm, 직경 2.5cm

나. 재료

- (1) 깃봉 및 깃대 : 철강재 백색도금
- (2) 받침대 : 철재

[별도 2]

의용소방대 표지

1. 도안



2. 규격

- 가. 새매의 크기 : 가로 90cm, 세로 58cm
 - 나. 햇불의 크기 : 가로 9.3cm, 세로 14cm
 - 다. 태양의 크기 : 원외경 37cm
 - 라. 소방호스의 길이 : 길이 43cm
3. 재질 : 동판(구리65%+아연35% 내외로 적절히 합금)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312호
 서울특별시119구급대및구조대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119구급대 및 구조대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
 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
 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6년 3월 2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
 한 규칙」의 전문개정(2005.8.22. 행정자
 치부령)으로 서울특별시에 두는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기준이 동
 부령에서 직접 규정됨에 따라 이 규칙 중
 중복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
 하는 한편, 응급환자에 대한 적절한 응급
 처치 및 이송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서울
 특별시구급대책협의회'의 위촉위원의 임기
 를 2년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동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
 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3월 2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
 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구조구급과장, 서
 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6-7, 서울특별시소
 방방재본부 구조구급과, 전화 : 02)3706-
 1721, FAX : 02)3706-1719, E-mail :
 kimjs4@paran.com)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
 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
 소 및 전화번호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6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
 건설부고시 제1978-393호(1978.12.17)
 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서울시고시 제
 1980-403호(1980.12.6)로 지형도면작성,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303호(2005.10.13)
 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된
 『신길로~도림로간 도로확장공사』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제91
 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7조, 제100조 규
 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
 획을 변경작성하고 고시합니다.

2006년 3월 2일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262-1~
254-25간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2) 명 칭 : 신길로~도림로간 도로확장공사
- 다. 사업규모(변경없음) : 폭15 → 30m,
연장360m
- 라.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1) 서울특별시장
 - 2)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마. 사업착수 및 준공년월일(변경없음) :
실시계획고시일로부터 3년
- 바. 사용 및 수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
번, 지적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
별첨
- 사. 시민열람의 편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도
로계획과(☎ 3707-8135) 영등포구청
토목과(☎ 2670-3815)에 관계도면과
서류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물 건 조 서

물건 번호	구분	소재지		구 조	용 도	공부상 면적 (㎡)	저축 면적 (㎡)	지 분	소유자		관계인			비 고
		동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외 관다종류및내용	
73	당초	신길동	260-9	판자	점포	110	110		박동석	영등포구 신길동 260-9				
			259-5	판자	점포	198	198		파이동	영등포구 신길동 259-5				
			254-24	판자	점포	147	147		남상우	영등포구 신길동 254-1				
73	변경	신길동	260-9	판자	점포	110	68		박동석	영등포구 신길동 260-9				소유자변경 요청
							18		김순오	영등포구 신길동 260-9				박동석의110㎡중 18㎡

물건 번호	구분	소재지		구조	용도	공부상 면적 (㎡)	저축 면적 (㎡)	지분	소유자		관계인			비고
		동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관계 관다종류및내용	
73	변경	신길동	260-9	판자	점포	110	24		김숙자	영등포구 신길동 260-9				박동석의110㎡중 24㎡
			259-5	판자	점포	198	198		피이동	영등포구 신길동 259-5				변경없음
			254-24	판자	점포	147	106.16		남상우	영등포구 신길동 254-1				37㎡ 보상제외
							1.92		조삼순	영등포구 신길동 254-1				
							1.92		독고경자	영등포구 신길동 254-1				

영 업 권 조 서

물건 번호	구분	소재지		물건 종류	상호명	업종	소유자		비고
		동	지번				성명	주소	
125	당초	신길동	254-9	영업권	꼬꼬리따	소매업	김은화	영등포구 신길동 254-9	
125	변경	신길동	254-9	영업권	코코리타	소매업	김은화	영등포구 신길동 254-9	상호명칭변경
141	당초	-	-	-	-	-	-	-	-
141	변경	신길동	254-1	영업권	수정당	소매업	안희도	영등포구 신길동 254-1	신규
142	당초	-	-	-	-	-	-	-	-
142	변경	신길동	254-1	영업권	행복한집	음식점	조명희	영등포구 신길동 254-1	신규
143	당초	-	-	-	-	-	-	-	-
143	변경	신길동	264-3	영업권	대홍물산	음식점	박희정	영등포구 신길동 264-3	신규
144	당초	-	-	-	-	-	-	-	-
144	변경	신길동	264-3	영업권	도림신협 헬스장	체력단련	윤종업	영등포구 신길동 264-3	신규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68호
 도시계획시설사업(자동차정류장, 도로)
 실시계획 변경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93호(2001.4.6)로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도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126호(2004.5.6) 및 제2005-433호(2005.12.29)로 도시계획시설사업(자동차정류장, 도로) 실시계획 변경 고시된 『중랑권역 공영차고지 및 주변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 제91조, 동 법률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교통개선기획단 버스지원반(☎ 3707-9740), SH공사 택지계획팀(☎ 3410-725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6년 3월 2일
 서울특별시장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변경없음(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65번지 일원)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변경없음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자동차정류장, 도로)
 ○ 사업의 명칭 : 중랑권역 공영차고지 및 주변도로 개설공사
-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도로 중로3류 일부구간 변경

- 자동차 정류장 면적 : A=51,817㎡ (변경없음)
- 도로개설 : B=12m~20m, L=504m (변경없음)
 - 중로1류 : B=20m, L=342m (변경없음)
 - 중로3류 : B=12m, L=162m (종점부 일부 도로 확폭)
 ※ 추가 편입토지 내역 : 아래 참조
-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 변경없음
 ○ 성 명 : 서울특별시장 이명박 (대행 : SH공사 사장 이철수)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31번지
-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 변경없음
 ○ 사업의 착수일 : 2003.10.25
 ○ 사업의 준공일 : 2006.9.30 (조성공사 준공 : 2006.4.30)
- 바.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시설물 배치계획도 : 별첨 참조
-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없음
- 아.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과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아래 참조

■ 추가 편입토지 내역

연번	구분	지 번	지 목	팔자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 고
						성 명	주 소	
1	신설	중랑구 신내동 68-4	도로	20	20	서울특별시		전체 편입
2	신설	중랑구 신내동 114-1	구거	3,994	66	서울특별시 중랑구		일부 편입

※ 당초 사업대상 토지 내역 : 변경사항 없음

■ 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1. 기존의 공공시설 및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조서

기존의 공공시설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			
번호	구분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실제이용상황			비고	시설명	규모	비고
				공부	편입	무상귀속		공공시설		공공시설외				
								도로	구거					
1	신설	신내동 68-4	도	20	20	20	서울특별시				20			
2	신설	신내동 114-1	구	3,994	66	66	중랑구				66		B=12M, L=162M	종점 일부 확 폭으로 추가 토지 편입됨

2. 무상귀속 토지 총괄조서

가. 지목별 총괄조서

구분	필지수		면적(m ²)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계	27	29	4,154	4,240	
답	1	1	2	2	
철	1	1	1,039	1,039	
구거	12	13	1,701	1,767	
도로	13	14	1,412	1,432	

나. 소관청별 총괄조서

구분	총계				서울특별시				중랑구				비고
	필지수		면적(m ²)		필지수		면적(m ²)		필지수		면적(m ²)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계	27	29	4,154	4,240	13	14	2,440	2,460	14	15	1,714	1,780	
답	1	1	2	2	1	1	2	2	-	-	-	-	
철	1	1	1,039	1,039	1	1	1,039	1,039	-	-	-	-	
구거	12	13	1,701	1,767	-	-	-	-	12	13	1,701	1,767	
도로	13	14	1,412	1,432	11	12	1,399	1,419	2	2	13	13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69호

도시계획시설(인왕산도시자연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181호(2005.6.16)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331호(2005.11.3)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실시계획 고시된 인왕산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공원과와 종로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6년 3월 2일

서울특별시장

가. 실시계획의 주요내용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종로구 청운동 3-45번지 일대(변경없음)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나) 사업의 명칭 : 인왕산도시자연공원 조성
- 3) 사업시행규모 : 6,405㎡(변경없음)
-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변경없음)
-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변경없음)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 별첨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공원과(☎ 3707-9618)와 종로구 공원녹지과(☎ 731-03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 사업명 : 인왕산도시자연공원조성

변 경 전										변 경 후						
일련 번호	소재지	지목	지적 (㎡)	수용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지적 (㎡)	수용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성명	주 소	종류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종류	성명	주 소
1	종로구 청운동 2-3	대	34.70	34.70	국 (재무부)							변동없음				
2	종로구 청운동 2-66	대	34.70	34.70	국 (재무부)							"				
3	종로구 청운동 3-45	공원	77.10	77.10	종로구							"				
4	종로구 청운동 3-46	공원	126.30	126.30	종로구							"				
5	종로구 청운동 3-47	대	112.40	112.40	김채순	종로구 청운동 3-47						"				
6	종로구 청운동 3-48	대	20.80	34.70	국 (재무부)					20.80	20.80					
7	종로구 청운동 3-49	공원	112.40	112.40	종로구							변동없음				

제 2687 호

시

부

2006. 3. 2. (목)

변 경 전										변 경 후						
일련 번호	소재지	지목	지적 (㎡)	수용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지적 (㎡)	수용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성명	주 소	종류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종류	성명	주 소
8	종로구 청운동 3-50	대	51.20	51.50	종로구					51.20	51.20					
9	종로구 청운동 3-51	대	115.70	115.70	국(재무부)							변동없음				
10	종로구 청운동 3-52	대	62.80	62.80	박장연	종로구 청운동 3-52						"				
11	종로구 청운동 3-53	대	177.50	177.50	국 (재무부)							"				
12	종로구 청운동 3-54	대	5.00	5.00	국 (재무부)							"				
13	종로구 청운동 3-55	대	357.90	357.90	국 (재무부)							"				
14	종로구 청운동 3-56	대	142.10	142.10	국 (문화재청)							"				
15	종로구 청운동 3-57	대	158.70	158.70	김일계	종로구 청운동 3-57						"				

제 2687 호

시

구

2006. 3. 2. (목)

변 경 전										변 경 후						
일련 번호	소재지	지목	지적 (㎡)	수용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지적 (㎡)	수용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성명	주 소	종류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종류	성명	주 소
16	종로구 청운동 3-58	대	76.00	76.00	국 (문화재청)							변동없음				
17	종로구 청운동 3-59	대	79.30	79.30	이정숙	종로구 청운동 3-59	근저당권	청운동 새마을금고	종로구 신교동 51-2			이정숙	종로구 청운동 3-59			
18	종로구 청운동 3-60	대	168.60	168.60	원성옥	인천.계양. 오류동 신동아A 13-1101	근저당권	김성원	광진구 광장동 484 현대A 309-1902				변동없음			
19	종로구 청운동 3-61	대	228.10	228.10	양성열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15 문촌마을 1102-1004						양성열	종로구 청운동 3-61			
20	종로구 청운동 3-62	대	69.40	69.40	박성호	종로구 청운동 3-62							변동없음			
21	종로구 청운동 3-63	대	148.80	148.80	이은수	종로구 청운동 3-63	근저당권	청운동 새마을금고	종로구 신교동 51-2			이은수	종로구 청운동 3-63	근저당권 지상권	청운동 새마을금고 종로구 신교동 51-2	
22	종로구 청운동 3-64	대	105.80	105.80	손형근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1375 경남A 150-1402	근저당권	청운동 새마을금고	종로구 신교동 51-2			손형근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1375 경남A 150-1402			

계 2687 호

N

H

2006. 3. 2. (목)

변 경 전										변 경 후						
일련 번호	소재지	지목	지적 (㎡)	수용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지적 (㎡)	수용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성명	주 소	종류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종류	성명	주 소
23	종로구 청운동 3-65	대	179.80	179.80	국 (산림청)							변동없음				
24	종로구 청운동 3-66	대	1,278.0	1,278.0	국 (문화재청)							변동없음				
25	종로구 청운동 3-67	대	99.20	99.20	김성환	동작구 상도동 202-201						변동없음				
26	종로구 청운동 3-68	대	66.10	66.10	이경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958 햇빛마을 2414-203						변동없음				
27	종로구 청운동 3-69	대	188.40	188.40	신경희	종로구 청운동 3-69	가압류	서울신용 보증재단	강남구 역삼동 679-5 이주빌딩 (동대문지점)			신경희	종로구 청운동 3-69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	신용균	청운동 3-69
								농업협동 조합	중구 충정로 1가 75(창동신 유통지점)							
								중소기업 은행	중구 을지로 2가 50 (카드관리팀)							
								주식회사 외환은행	중구 을지로 2가 181 (카드장기채권팀)							
											신경희	종로구 청운동 3-69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처분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중구 태평로 2가 150	
												가압류	"	"		

제 2687 호

시

구

2006. 3. 2. (금)

변 경 전										변 경 후							
일련 번호	소재지	지목	지적 (㎡)	수용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지적 (㎡)	수용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성명	주 소	종류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종류	성명	주 소	
27	종로구 청운동 3-69	대	188.40	188.40	신경희	종로구 청운동 3-69	압류	종로구	세무2과-6759			신경 희	종로구 청운동 3-69	압류	종로구	세무2과 -6759	
							가등기	신용균	청운동 3-69					가압류	엘지카드 주식회사	중구 남대문로 5가 6-1	
28	종로구 청운동 3-70	대	148.80	148.80	전진순	청주시 북문로 2가 116-150						변동없음					
29	종로구 청운동 3-71	대	49.60	49.60	이준현	송파구 잠실 3동 주공A 442-502	압류	역삼세무소					이준현	서초구 잠원동 53 잠원현대A 101동 1707호 (1/9지분)			
					정상학								정상학	송파구 잠실3동 주공A 442동 502호 (3/9지분)			
					정상룡								정상룡	송파구 잠실3동 주공A 442동 502호 (2/9지분)			
					정상봉								정상봉	송파구 잠실3동 주공A 442동 502호 (2/9지분)			
							의왕시	세무 1340-282									

제 2687 호

시

구

2006. 3. 2. (목)

변 경 전										변 경 후							
일련 번호	소재지	지목	지적 (㎡)	수용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지적 (㎡)	수용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성명	주 소	종류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종류	성명	주 소	
29	종로구 청운동 3-71	대	49.60	49.60	정상희	송파구 잠 실 3동 주공A 442-502	압류	안양세무소	정세 46100-4985			정상희	송파구 잠실3동 주공A 442동 502호 (1/9지분)	역삼세무소			
														의왕시	세무1340-282		
														안양세무소	정세 46100-4985		
														국민건강 보험공단	마포구 염리동 168-9 (의료보험회관 의왕지사)		
30	종로구 청운동 3-72	대	178.50	178.50	변석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91 한양A 317-2302						변동없음					
31	종로구 청운동 3-73	공원	123.00	123.00	종로구							변동없음					
32	종로구 청운동 3-80	대	538.80	538.80	국 (재무부)							"					
33	종로구 청운동 3-100	대	903.80	903.80	서울특별시							"					
34	종로구 청운동 3-101	대	73.70	73.70	국 (문화재청)							"					

계 2687 호

시

구

2006. 3. 2. (목)

변 경 전										변 경 후						
일련 번호	소재지	지목	지적 (㎡)	수용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지적 (㎡)	수용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성명	주 소	종류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종류	성명	주 소
35	종로구 청운동 3-102	대	0.30	0.30	국 (문화재청)								"			
36	종로구 청운동 3-105	공원	16.50	16.50	종로구								"			
37	종로구 청운동 3-114	대	6.30	6.30	국 (재무부)								"			
38	종로구 청운동 3-117	대	5.00	5.00	국 (재무부)								"			
39	종로구 청운동 3-118	대	20.20	20.20	국 (재무부)								"			
40	종로구 청운동 3-122	대	13.20	13.20	국 (재무부)								"			
41	종로구 청운동 3-130	공원	15.50	15.50	종로구								"			
42	종로구 청운동 3-131	대	0.30	0.30	서울특별시								"			
43	종로구 청운동 3-140	대	20.50	20.50	국 (재무부)								"			

제 2687 호

시

구

2006. 3. 2. (목)

지 장 물 조 서

◎ 사업명 : 인왕산도시자연공원조성

변 경 전										변 경 후									
일련 번호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 격	수용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 격	수용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성명	주소	종류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성명	주소		
1	종로구 청운동 3-47	건물 담장	벽돌조/기와 벽돌	45.5 1식	김채순	청운동 3-47				건 물 담 장	벽돌/합석 블록	45.5 1식	김채순	청운동 3-47					
2	종로구 청운동 3-52	건물 창고 대문 담장	세멘조 세멘조 - 벽돌	81.7 5.2 1식 1식	박장연	전라남도 나주시 반남면 석천리 261-1				건 물 화장실 가건물 창 고 대 문 담 장	벽돌/기와 벽돌/스레트 사시/선라이트 벽돌/스레트 철 재 벽 돌	73.6 9.1 16.2 5.2 1식 1식	최정락	서초구 잠원동 50 롯데캐슬 갤럭시 105동 804호					
3	종로구 청운동 3-57	건물 건물 건물 대문 담장	세멘벽돌조/ 세멘기와 " " - 벽돌	61.5 10.5 31.7 1식 1식	신장현	경기도 용인시 구성읍 마북리 삼거마을 삼성래미안 1차㉠ 115-102				건 물 건 물 보일러실 화장실 대 문 담 장	벽돌/기와 벽돌/합석 벽돌/판넬 판넬 철재 벽돌	56.5 31.7 5.0 10.5 1식 1식	신장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629 삼거마을 삼성래미안 1차115-102					
4	종로구 청운동 3-59	건물 담장 대문	블록조/ 세멘기와 벽돌 -	78.5 1식 1식	이군주	강동구 성내동 204-3	근저당권	청운동 새마을금고	종로구 신교동 51-2	건 물 화장실 보일러실 대 문 담 장	벽돌/기와 벽돌/스레트 벽돌/스레트 철재 블록	70.8 2.6 5.1 1식 1식	김군주	강동구 성내동 204-3					
5	종로구 청운동 3-60	건물 대문 담장	세멘벽돌조/ 기와지붕 - 벽돌	131.7 1식 1식	윤 배	중구 필동 2가 124-8				건 물 화장실 대 문 담 장	벽돌/기와 벽돌/스레트 철재 벽돌	127.0 4.7 2식 1식	윤 배	중구 필동 2가 124-8	근저 당권	김성원	광진구 광장동 484 현대㉠ 309-1902		

제 2687 호

시

부

2006. 3. 2. (부)

변 경 전										변 경 후							
일련 번호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 격	수용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 격	수용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성명	주소	종류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성명	주소
6	종로구 청운동 3-61	건물 화장실 대문 담장	목조외죽 " - 벽돌	59.4 19.3 1식 1식	양성열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12 문촌마을 802-901				건 물 가건물 대 문 담 장	벽돌/합석 목조/합석 철재 벽돌	59.4 19.3 1식 1식	양성열	종로구 청운동 3-61			
7	종로구 청운동 3-62	건물 화장실 담장 대문 건물 창고	시멘트벽돌조 /시멘기와 " - 벽돌 세멘조 벽돌	51.3 2.5 1식 1식 45.3 4.8	박성호	청운동 3-62				건 물 건 물 화장실 대 문 담 장	벽돌/기와 벽돌/스레트 벽돌/스레트 철재 벽돌	46.8 4.5 2.5 1식 1식	박성호	종로구 청운동 3-62			
8	종로구 청운동 3-63	건물 보일러 실 대문 담장	세멘조 " - 벽돌	92.5 2.1 1식 1식	김선영	관악구 신림5동 1450-41 101호				건 물 건 물 건 물 보일러실 대 문 담 장	벽돌/기와 벽돌/슬래브 벽돌/스레트 벽돌/판넬 철재 벽돌 세멘조 벽돌	62.7 16.4 13.4 2.1 1식 1식 45.3 4.8	김선영	관악구 신림5동 1450-41 101호			
9	종로구 청운동 3-63	건물 창고	세멘조 벽돌	45.3 4.8	이훈주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1477(10/6)				건물 창고	세멘조 벽돌	45.3 4.8					
10	종로구 청운동 3-64	건물 대문 담장 건물	세멘블럭조/ 기와 - 벽돌 세멘조	52.49 1식 1식 37.01	박추자 외1	부산 해운대구 좌동 1375 경남④ 150-1402	근저당권 주택임차권	청운동새마 을금고 신교동 52 장미순 청운동 3-64	건 물 건 물 대 문 담 장	벽돌/기와 벽돌/슬래브 철재/사시 벽돌	73.9 15.6 2식 1식	손형근	부산 해운대구 좌동 1375 경남④ 150-1402	주택 임차권	장미순	청운동 3-64	

변 경 전										변 경 후							
일련 번호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 격	수용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 격	수용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성명	주소	종류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성명	주소
11	종로구 청운동 3-67	건물 대문	세멘블럭조/ 기와 -	103.7 1식	김양우	동작구 상도동 202-201				건 물 창 고 대 문 담 장	벽돌/합석 벽돌/슬래브 철재/슬래브 블록	87.5 6.6 1식 1식	김양우	동작구 상도동 202-201			
12	종로구 청운동 3-68	건물 건물 화장실 창고 대문 담장	세멘조 " " " - 벽돌	43.6 5.1 13.2 20.0 1식 1식	박정호	은평구 진관외동 396(28/8)				건 물 건 물 창 고 대 문 담 장	벽돌/기와 벽돌/판넬 블록/기와 철재 블록	43.6 13.2 5.1 1식 1식	정해숙	송파구 잠실동 251-8, 401호			
13	종로구 청운동 3-69	건물 대문 담장	세멘조 - 벽돌	121.2 1식 1식	신경희	청운동 3-69				건 물 건 물 창 고 대 문 담 장	벽돌/기와 벽돌/스레트 목조/스레트 철재 블록	85.2 36.0 20.0 1식 1식	박소진	마포구 상암동 상암택지 개발사업지구 2-3블럭 상암일드컴파크 3단지 301동 502호			
14	종로구 청운동 3-70	건물 화장실 대문 담장	세멘조 " - 벽돌	59.1 2.1 1식 1식	김영수	동작구 상도동 36-1 매립㉠ 3-102				건 물 건 물 창 고 대 문 담 장	벽돌/기와 벽돌/합석 블록/스레트 철재 블록	45.3 13.8 2.1 1식 1식	이연우	마포구 도화동 550 마포삼성㉠ 105동 102호			
15	종로구 청운동 3-71	건물 담장 대문	세멘조 벽돌 -	51.4 1식 1식	이준현	서초구 잠원동 53 잠원현대㉠ 101-1707				건 물 대 문 담 장	벽돌/스레트 철재 블록	51.4 1식 1식	이준현	서초구 잠원동 53 잠원현대㉠ 101동 1707호			

변 경 전										변 경 후							
일련 번호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 격	수용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 격	수용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성명	주소	종류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성명	주소
16	종로구 청운동 3-72	건물 화장실 대문 담장 건물	시멘트벽돌조 " - 벽돌 세멘조	103.1 7.5 1식 1식 29.0	안수현	영등포구 신길동 1-10				건 물 건 물 화장실 대 문 담 장	벽돌/기와 판넬 벽돌/슬래브 철재 벽돌	79.4 52.7 7.5 1식 1식	안수현	영등포구 신길동 1-10			
17	종로구 청운동 3-100	펌프장	세멘블럭조/ 평육개평가	36.3	서울시									변동없음			

계 2687 호

시

호

2006. 3. 2. (목)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320호

2006년도 제4차 건축물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결과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24조의2·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2006
년도 제4차 서울특별시 미술장식심의위원
회」의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2일
서울특별시

- 가. 심의일시 : 2006. 2. 17(금)
- 나. 심의장소 : 시청별관1동 12층회의실
- 다. 심의작품
 - 10건 12작품(조각12), 좌대변경1건 1작품
- 라. 심의결과
 - 승 인 : 7작품(조각7), 좌대변경1작품(조각1)
 - 재 심 : 2작품(조각2)
 - 조건부 승인 : 2작품(조각2)
- 마. 작품별 심의결과 : 별첨
-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문화과
(☎ 02)3707-941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미술장식품별 심의결과

연번	설 치 위 치	종류	작 품 명	심의 결과	사 유	신 청 인
1	구로구 신도림동 412-3번지 외 2필지	조각	또하나의 세계	재심	가격에 비해 양감이 부족, 조형 미 부족, 건축물(환경)과 부조화	강남구 역삼동 605-3 ㈜피앤디개발 이용백
2	서초구 서초1동 1444번지 7호	조각	아름다운날	재심	상투적이며 공공성 부족, 내 용미, 조형미 부족, 안전성 보 완, 형태의 불안정성, 조형물 에 대한 개념 해석 결여, 칼 라도색의 유지보수의 문제점	우성4차아파트 재건축조합장 김갑태, 중구 남대문로 5가 537 ㈜GS건설 김갑렬
3	강남구 청담동 69-18	조각	소리의 파동	재심	비독창적, 안전성 보완(뽕죽 한 부분, 용접부위), 악기의 조형성 보완요, 좌대의 높이 가 높음	강남구 청담동 69-18 리버뷰오피스텔 306호 진흥빌라재건축조합장 이태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29-9 (주)동양건설산업 박철일
4	구로구 구로동 782-1	조각	여울목	조건부 승인	작품 측면의 오석 두께를 조금 더 두껍게 할 것.	구로구 구로3동 793-48 2층 구로8구역 재개발조합장 나규열, 강남구 논현동 105-7 ㈜두산산업개발 김흥구
5	마포구 상암동 상암3공구 택지개발지구내 4단지	조각	빛의화원	승인		강남구 개포동 14-5 SH공사 사장 이철수
6	성북구 장위동 304 장일 택지개발지구내 1블록	조각	둘이서	승인		강남구 개포동 14-5 SH공사 사장 이철수
7	성북구 장위동 304 장일 택지개발지구내 2블록	조각	고향의언덕 -(향수)	승인		강남구 개포동 14-5 SH공사 사장 이철수

연번	설 치 위 치	종류	작 품 명	심의 결과	사 유	신 청 인
8	관악구 신림재개발 지구내 1단지	조각	투영	승인		강남구 논현동 254번지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장
9-1	관악구 신림재개발 지구내 2단지	조각	아침의 여행	승인		강남구 논현동 254번지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장
9-2		조각	숲으로	승인		
9-3		조각	내정원의 부영이	조건부 승인	작품 하단의 각진돌의 안전성 보완 요.	
10	관악구 신림재개발 지구내 3단지	조각	행복그리기	승인		강남구 논현동 254번지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장
11	성동구 행당동 287-15번지	조각	하나가되어... (05)	승인		송파구 가락동 214-10 ㈜오림건축 정인영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321호

대부업자 행정처분(직권등록취소)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5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에 등록된 대부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직권등록취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2일
서울특별시

1. 공고의 명칭 : 대부업자 행정처분(직권등록취소) 공고
2. 공고대상 : 신림유통 외15개업체 (대상업체 명단 : 따로붙임)
3. 공고내용
 - 가. 소재확인이 불가능한 귀하(사)에 대하여 행정절차에 따라 직권등록취소 예고 통지와 소재확인 공고(2006.1.12~2006.2.13)를 하였으나, 동 기간까지 소재지 변경 등 이의신청을 이행하지 않아 귀하(사)의 대부업 등록을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직권등록취소 하였으니, 대

부업 등록증을 서울시(생활경제과, T. 02-3707-9332)에 즉시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아울러, 동 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행정심판법 제17조·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취소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 등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직권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대부업자는 향후 5년간 대부업 등록이 제한 됨 (동법제4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생활경제과(☎ 02-3707-93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재불가 대부업체 직권등록취소 내역(16개업체)

연번	등록번호	대상업체명	대표자	주인등록번호	소재지	처분내용	작용법규
1	195	신림유통	이경화	470306-#####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22-38 201호	대부업 등록취소 (직권) -취소일: 2006.2.21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5호(소제확인 불가)
2	574	청색구조	박희진	551018-#####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33-14 우성빌딩 606호	상 동	상 동
3	2193	미 래	서임숙	540629-#####	서울 관악구 봉천동 875-1호	상 동	상 동
4	2898	엠엔씨컨설팅	송장규	740429-#####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21-45 206호	상 동	상 동
5	2939	환 회	임영숙	710201-#####	서울 관악구 신림동 1658-10	상 동	상 동
6	3003	하 나	홍인표	811124-#####	서울 관악구 봉천동 869-10호 쉐츄리빌딩 302호	상 동	상 동
7	3058	태 신	조인호	760220-#####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23-10 301호	상 동	상 동
8	3586	코리아머니	김복례	641117-#####	서울 관악구 봉천본동 931-11 정주빌딩 305호	상 동	상 동
9	3911	삼성시티	전용채	571026-#####	서울 관악구 봉천동 860-10호 쉐츄리빌딩1306호	상 동	상 동
10	4579	한성유통	최순홍	3910105-#####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24-19	상 동	상 동
11	4687	론@브릿지	이완규	691105-#####	서울 관악구 봉천동 1663-10 5층3호	상 동	상 동
12	4571	C&C 크레디트	신승훈	770927-#####	서울 마포구 동교동 156-2호 마젤란21 오피스텔 704	상 동	상 동
13	4713	하나금융	신현숙	751222-#####	서울 마포구 동교동 156-2호 마젤란21 오피스텔 704	상 동	상 동
14	1026	씨엔씨(C&C) 컨설팅	김종승	750316-#####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4가 39-2호 2층	상 동	상 동
15	2051	좋은사회	엄병호	600817-#####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3가 386-11호 한성빌딩 2층	상 동	상 동
16	3414	OK 론	김성관	680319-#####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3가 208	상 동	상 동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322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자 행정처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직권

등록취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2일
서울특별시

대 상 업 체			위 반 내 용	적 용 법 규	처분내용 (처분일)
상호(등록번호)	대표자	소 재 지			
(주)그래프골드 (573)	김태수	동작구 사당동 1031-26 해암빌딩 6층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공제거래) 계약해지 후 재계약 미이행 등 실질적으로 영업불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5조 및 제34조	등록취소 (’06.2.21)
(주)웨민라이프 (582)	김규식	영등포구 문래동 3가 55-7 에어스테크노타워 4층	위와 같음	위와 같음	등록취소 (’06.2.21)
(주)싸이라이프 (596)	이강욱	서초구 서초동 1540-1 2층	위와 같음	위와 같음	등록취소 (’06.2.21)
(주)베스트존 (611)	김하영	강남구 역삼동 636-25 덕수빌딩 2층 202호	위와 같음	위와 같음	등록취소 (’06.2.21)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생활
경제과(☎ 3707-9334)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63호, '06.2.9)과 관련 『노숙인 대책반』이
부서신설됨에 따라 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
원직인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신설된 직
제 직인을 등록하고 동규칙 제11조의 규정
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331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등록
노숙인 대책반 구성·운영계획(시장방침 제

2006년 3월 2일
서울특별시

1. 등록 직인

소관부서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 영	직인등록일자	등록사유
노숙인 대책반	노숙인대책반 일상경비출납원	한글전서체 1.8cm×1.8cm		'06. 2. 22	부서 신설
	노숙인대책반 분임물품출납원	한글전서체 1.8cm×1.8cm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334호

2006년 서울특별시 명예시민 추천

서울시는 서울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고 서울시민과 서울거주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외국인을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으로 선정하고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대상자를 추천 받습니다.

2006년 3월 2일

서울특별시

- 1. 명예시민 추천대상자 자격
 - 가. 외국인*으로서 서울시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또는 총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
 - 나. 대내·외적으로 서울시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자
 - 다. 시민의 생활 및 문화활동 증진에 크게 공헌한 자
 - 라. 서울시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 마.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 선진기술을 도입하는 데 크게 기여한 자

*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 출입국관리국에 외국인 등록을 필한 자를 말함 (외교관 등 외국인 등록 면제자 포함).
- 2. 추천권자
 - 가. 공공단체의 장(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로부터 존립목적이 부여된 법인·단체의 장)
 - 나. 10인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 다. 10인 이상의 시민(연대서명 필요)
- 3. 제출서류
 - 가. 추천서 1통 : 추천자가 추천대상자의 인적사항, 주요경력, 공적사항 등을 한글이나 영어로 기재
 - 나. 추천대상자 사진 1매 :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여권용 사진
- 4. 추천서 접수기간 및 접수처
 - 가. 접수기간 : 2006.3.2~31
 - 나. 접수처 : 서울시청 국제협력과(시청별

- 관 1동 10층)
- 다. 접수방법 : 우편접수, 인편접수, 이메일 접수
 - (1) 우편접수 주소 :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31번지 서울시청 국제협력과 (우편번호 : 100-744)
 - (2) 우편접수는 2006.3.31일자 소인까지 유효
 - (3) 이메일 접수(inter@seoul.go.kr)의 경우 접수기간 내에 우편이나 인편으로 제출서류 원본을 제출해야 함.
- 5. 추천대상자 심사 및 선정
 - 가. 서울시에서 출입국관리국에 추천대상자에 대해 외국인등록번호, 등록지주소, 근무처, 거주기간, 범법사항 등을 확인
 - 나. 거주기간 해당자에 대해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에서 추천대상자의 공적내용을 심사 후 적격자 선정(15명 내외)
 - (1)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 개최 : '06.4월 중순
 - (2) 필요시 추천내용이 미비할 경우 추천자에게 자료 보완 및 사실 확인 등 요청
- 6. 명예시민 혜택
 - 가. 명예시민증, 명예시민메달, 명예시민증명서 수여
 - 나. 시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시 주관행사에 참여 하는 등 시정 참여 기회 부여
 - 다.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역사박물관, 서울 대공원, 어린이대공원 무료입장
 - 라. 만65세 이상 명예시민은 서울지하철 무료승차
- 7. 기타사항
 - 가. 추천서 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1) 한글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

go.kr) → 비즈니스 → 국제 교류통상 → 국제교류업무가이드 → 명예시민 증제도

(2) 영어 :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English Web Site (english.seoul.go.kr) → City Government → International Cooperation → Honorary Citizenship

나. 명예시민으로 선정된 분께는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 개최 후 3일 이내에 개별적으로 통보를 하고, 명예시민증 수여식은 '06.5.6(토) '지구촌 한마당 축제' 때 서울광장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국제협력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 담당자 : 조경익
(2) 연락처 : 전화 3707-9354, 팩스 6321-4489, 이메일 inter@seoul.go.kr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337호
측량업 신규등록
측량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의 신규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2일
서울특별시

측량업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자	소 재 지	등록일
일반측량업 02-01-2022	(주) 평광이앤시	이동희	서울 송파구 가락동 98-2 뉴헤밀리오피스텔 806호 ☎ 02-402-1859	2006.2.22

※ 문의사항 :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 (02-3707-8057)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338호
자동차전용도로 변경

도로법 제54조의3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자동차전용도로를 변경(일부구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2일
서울특별시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가. 도로의 종류 : 자동차전용도로
나. 노선명 : 남부순환로

2. 자동차전용도로 변경(해제) 구간 및 개요
가. 구간 : 남부순환로 자동차전용도로(시흥 IC~오류IC간)중 시흥IC~구로IC간
나. 개요 : 연장 2.2km, 폭 4~5차로

3. 변경(해제) 사유

상기구간에는 신호등과 횡단보도등이 기 설치되어 있고, 가산동 79-2주변 도로 개설공사로 신설되는 도로가 평면교차 하게 됨에 따라 사실상 자동차전용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함.

4. 목 적
자동차전용도로를 해제하여 일반도로로 환원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편의를 도모 하기 위함.

5. 기타사항
가. 변경(해제) 구간 노선도면 : 게재생략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전화 3707-8134~5)로 문의 하시기 바라며 해제구간 노선도면은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339호
회계관계공무원직인등록
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직인등록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직인을 등록하고 동 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함.

2006년 3월 2일
서울특별시장

1. 직인등록일자 : 2006. 2. 23
2. 등록사유 : 직제 신설
3. 기관명 : 서울특별시 신청사증축추진반

4. 신조교부 직인인영

등록직인명	인 영	등록직인명	인 영	등록직인명	인 영
서울특별시 신청사증축추진반 분임경리관인		서울특별시 신청사증축추진반 일상경비출납원인		서울특별시 신청사증축추진반 분임물품출납원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342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 행정처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해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2일
서울특별시장

1. 행정처분 대상 및 내용

당 사 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등록번호	상 호(대표성명)	주 소		
112806	(주)코어세스(하정율)	서울 강남구 대치동 997-4 코어세스빌딩	등록기준 미신고	영업정지 3월 (2006.2.23-5.22)
112835	인텍(이영석)	서울 송파구 송파동 48-19 신도빌딩 2층	등록기준 미신고	영업정지 3월 (2006.2.23-5.22)
112837	(주)태진인포텍(조병철)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452 바바인빌딩 5층	등록기준 미신고	영업정지 3월 (2006.2.23-5.22)
112841	(주)보성공업(김중수)	서울 성동구 성수2가 3동 277-58 성수빌딩 205호	등록기준 미신고	영업정지 3월 (2006.2.23-5.22)
112851	이젠이티(주)(주경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	등록기준 미달(기술자 부족)	영업정지 1월 (2006.2.23-3.22)
112876	(주)웹인텍(김태식)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6	등록기준 미달(기술자 부족)	영업정지 1월 (2006.2.23-3.22)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제 2항, 제15조 제1호, 제66조
3. 행정처분 일자 : 2006. 2. 17.

※ 내용문의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담당관
(02-6360-4992)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343호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도로)사업
 완료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222(1996.8.10)
 호로 인가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188
 (2005.6.23)호로 변경인가된 도시계획시설
 (유통업무설비)사업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1-227(2001.7.10)호로 변경인가 된 도
 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도로)사업에 대
 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완료공고 합니다.

2006년 3월 2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외발산동 7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
설비, 도로)사업
 - 사업의 명칭 :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및 우회도로건설 사업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2. 직인명 및 등록(폐기)일자

- 부지 : 217,913.6㎡
 - 건물 : 114,806.81㎡
 - 우회도로 : B=10m, L=691m
(강서구 외발산동 427-13)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31번지
 - 성 명 : 서울특별시장
 5. 사업의 인가 및 완료일
 - 인가일 : 1996. 8.10.
 - 완료일 : 2006. 1. 25.
 6. 공사의 관련도서 : 따로붙임(생략)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348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등록 및 폐기
 서울특별시회계공무원직인규칙 제7조의 규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인을 등록 및 폐
 기하고 동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를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2일
 서울특별시장

1. 직인 등록 및 폐기사유 : 직제개편

직 인 명	서체 및 규격	인 영	등록일자
뉴타운사업본부뉴타운사업 1반일상경비출납원인 (등록)	한글전서체(정사격형) 1.8cm×1.8cm		2006. 2.24
뉴타운사업본부뉴타운사업 1반분임물품출납원인 (등록)	한글전서체(정사격형) 1.8cm×1.8cm		2006. 2.24
뉴타운사업본부뉴타운사업반 일상경비출납원인 (폐기)	한글전서체(정사격형) 1.8cm×1.8cm		2006. 2.23

직 인 명	서체 및 규격	인 영	등록일자
뉴타운사업본부뉴타운사업반 분임물품출납원인 (폐기)	한글전서체(정사격형) 1.8cm×1.8cm		2006. 2.23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352호
지적측량업 신규등록

지적법 제41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의 신규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2일
서울특별시

- 업종 : 지적측량업 등록(신규)
- 상호 : 국토지적원주식회사
- 등록번호 : 서울 - 18
- 대표자 : 장한기
- 법인번호 : 110111-3383231
- 영 업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63-9 신동양빌딩 2층
-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
 - 경계점좌표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에서의 지적측량
 - 지적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경계점좌표등록부에 새로이 등록하기 위한측량)
- 등록일자 : 2006.2.23.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353호
지적측량업 소재지변경

지적법 제41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의 소재지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2일
서울특별시

- 업종 : 지적측량업
- 상호 : 태진지적측량기술단
- 등록번호 : 서울 - 10
- 대표자 : 박병성
- 주민등록번호 : 580616-*****
- 영업소소재지
 - 변경 전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603호
 - 변경 후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71-9 지정빌딩 4층
-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
 - 경계점좌표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에서의 지적측량
 - 지적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경계점좌표등록부에 새로이 등록하기 위한측량)
- 등록(변경)일자 : 2006.2.23.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354호
지적측량업 등록변경(지위승계)

지적법 제41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의 등록변경(지위승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2일
서울특별시

- 업종 : 지적측량업
- 등록번호 : 서울 - 10
- 등록변경(지위승계)
 - 변경 전 : (주)철우엔지니어링(110111-2534124) 대표자 이병수
 - 변경 후 : (주)케이씨지적정보(110111-

- 3212513) 대표자 홍성호
- 영업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6-17 일성빌딩 5층
 -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
 - 경계점좌표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에서의 지적측량
 - 지적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경계점좌표등록부에 새로이 등록하기 위한측량)
 - 등록(변경)일자 : 2006.2.23.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363호
다단계판매업 등록변경 및 휴업신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3조 제2항,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 등록변경 및 휴업신고를 다음과 같이 수리하고, 같은법 제26조 제1호, 2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2일
서울특별시장

■ 등록변경

신 고 인			변 경 내 용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변 경 전	변 경 후
제621호	제이유플러스(주)	정태수	○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7-6 영남빌딩 7.9층	○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68-23 제이유플딩 5층
			○ 전화번호 : 2051-8888	○ 전화번호 : 3014-5678
제195호	(주)한국엑스트라엑셀인터내셔널	루이강장	○ 대표자 : 자우페이첸	○ 대표자 : 루이강장
제628호	(주)퍼리내추럴	최수동	○ 대표자 : 김신욱	○ 대표자 : 최수동
제625호	(주)에일양행	이연옥	○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5 삼호물산 에이동 302호	○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7-6 영남빌딩 7층
			○ 대표자 : 김은영	○ 대표자 : 이연옥
			○ 전자우편주소 : leegeunbok@lycos.co.kr	○ 전자우편주소 : ianus20@naver.com

■ 휴업신고

신 고 인				휴업기간	사 유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제195호	(주)한국엑스트라엑셀인터내셔널	루이강장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8-1	2006.2.20 ~2007.2.19	매출부족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생활경제과(☎ 02-3707-93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고 시

◆ 용산구고시 제2006-8호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실시계획 변경
 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3-79호('93.3.19.)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152호(2004.
 5.31.)로 도시계획시설(학교)로 결정 및
 변경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
 152호(2004.5.31.)로 세부조성계획 변
 경결정된 용산구 청파동 2가 53-12호
 일대 학교법인 숙명학원 건설사업의 준
 공기한을 연기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같은법률시
 행령 제97조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
 례 제68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학
 교)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법률 제
 91조·같은법률시행령 제100조 및 서울

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
 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용산구청 도시정비과(☎ 710
 -3385~9)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
 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6년 3월 2일
 용 산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사업(학교)
 2) 명 칭 : 숙명여자대학교 건설사업

나. 사업 시행지의 위치
 - 위 치 : 용산구 청파동 2가 53-12호외
 20필지

다.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학교법인 숙명학원 이사장
 이용태
 2)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
 2가 53-12호

라. 사업기간
 - 당 초 : 2001. 1.~2006. 2. 28.
 - 변 경 : 2001. 1.~2008. 12. 31.

마.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구분	사업면적 (㎡)	시설 계획			비고
		건축면적 (건폐율)	연 면 적 (용적률)	층 수 (지하/지상)	
변경	79,120.6	23,839.55 (30.13%)	191,925.02㎡ (160.93%)	3/10	지하차도, 주민이용주차장(38면), 주민보행통로, 공원조 성, 주차장, 백주년기념관 신축, 학생회관·르네상스프라 자(연주홀)·지하주차장·서관·도서관·대학원관 증축, 생물 자원보존실·약대수위실·도서관·과학관 증축 및 변경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조서 등 :
 별첨
 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사항
 - 건축법 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 도로법
 제34조에 의한 도로공사시행
 아. 관계도서 : 용산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

◆ 성동구고시 제2006-8호
 금호제14주택재개발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4가 235번지
 일대 금호제14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원활
 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에 대

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6년 3월 2일
성 동 구 청 장

1. 정비사업구역 변경지정
 - 가. 정비사업의 명칭 : 금호제14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정비사업의 위치 및 면적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변경	금호제14주택 재개발사업	성동구 금호동 4가 235번지 일대	33,202.90	증)88.10	33,291.00	현황측량

다. 토지이용계획

구분	명칭	면 적(m ²)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합 계		33,202.90	33,291.00	100	1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4,301.00	4,448.30	12.95	13.36	
	도로	1,976.00	2,119.50	5.97	6.37	
	공원	1,661.00	1,681.80	5.00	5.05	어린이공원
	녹지	664.00	647.00	2.00	1.94	
택지 (획지)	소 계	28,901.90	28,842.70	87.05	86.64	
	택지(1)	25,068.90	25,039.70	75.50	75.21	조합원 및 분양아파트
	택지(2)	2,643.00	2,636.30	7.96	7.92	임대주택
	택지(3)	530.00	506.00	1.60	1.52	근린생활시설
	택지(3)	660.00	660.70	1.99	1.99	종교시설용지

라.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계획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 치		주 요 경과지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 점	종 점		
기정	소로	1	1	10	가능도로	일반도로	514	198-1	322	구역복축	
변경	소로	1	1	10	가능도로	일반도로	514	198-1	322	구역사측	선형변경
기정	중로	2	1	15~18	국지도로	일반도로	55	243-17	322	구역남측	
기정	대로	3	1	25	보조간선도로	일반도로	188	198-1	243-17	구역동측	

2) 도시계획시설(공원·녹지 등) 결정조서

결정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비 고
	명칭	세분류		기 정	증(감)	변 경	
기정	공원	어린이공원	금호동 4가 442-4번지 일대	1,661.00	증)20.80	1,681.80	현황측량 면적정정
기정	녹지	녹 지	금호동 4가 224-3번지 일대	664.00	감)17.00	647.00	현황측량 면적정정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

4)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변경없음

나)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역 구분		위 치	주 된 용도	건폐율 (%)	용적율 (%)	높이(m) 층수(층)
	명 칭	면적(m ²)					
기정	택지1	25,068.90	금호동 4가 134-6번지 일대	조합원아파트	30% 이하	227% 이하	46m이하 15층이하
	택지2	2,643.00	금호동 4가 442-9번지 일대	임대아파트	30% 이하	219% 이하	37m이하 12층이하
	택지3	530.00	금호동 4가 335번지 일대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시 관련법령적용		
	택지4	660.00	금호동 4가 451번지 일대	종교용지	건축허가시 관련법령적용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평 형	세 대 수	비 율	비 고	
			13평형	120	17.07	임대주택	
			24평형	293	41.68	조합원 및 일반분양	
			32평형	245	34.85		
			42평형	45	6.40		
			계	703	100		
변경	택지1	25,039.70	금호동 4가 134-6번지 일대	조합원아파트	30% 이하	227% 이하	46m이하 15층이하
	택지2	2,636.30	금호동 4가 442-9번지 일대	임대아파트	30% 이하	219% 이하	37m이하 12층이하
	택지3	506.00	금호동 4가 335번지 일대	생활편익시설	건축허가시 관련법령적용		
	택지4	660.70	금호동 4가 451번지 일대	종교용지	건축허가시 관련법령적용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평 형	세 대 수	비 율	비 고	
			13평형	120	17.02	임대주택	
			24평형	294	41.70	조합원 및 일반분양	
			32평형	246	34.90		
			42평형	45	6.38		
			계	705	100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건축법, 주택법 등 관련법규에 의함				

- | | |
|---------------------------------------------------------------------------------|-------------------------------------------|
| 5)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6)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8) 가구 및 획지에 관한계획 | 관한 계획 - 변경없음
7) 기존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 해당없음 |
|---------------------------------------------------------------------------------|-------------------------------------------|

택지1	25,039.70	금호동 4가 134-6번지 일대	조합원아파트	30% 이하	227% 이하	46m이하 15층이하
택지2	2,636.30	금호동 4가 442-9번지 일대	임대아파트	30% 이하	219% 이하	37m이하 12층이하
택지3	506.00	금호동 4가 335번지 일대	생활편익시설	건축허가시 관련법령적용		
택지4	660.70	금호동 4가 451번지 일대	종교용지	건축허가시 관련법령적용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평 형		세 대 수	비 율	비 고	
	13평형		120	17.02	조합원 및 일반분양	
	24평형		294	41.70		
	32평형		246	34.90		
	42평형		45	6.38		
	계		705	100		

- 9)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10) 환경성 검토결과 - 변경없음
 11)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건립위치	부지면적(m ²)	동수	연면적(m ²)	세 대 수	세대규모(전용m ²)	비 고
금호동 4가 442-9번지 일대	2,636.30	1	9,837.00	120	31	

2. 관련서류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성동구청 주택과(☎ 2286-5590~6)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 광진구고시 제2006-11호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 광진 공고 제2006-40(2006.1.24)호로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열람 공고된 광진구 광장동 353번지 외 1필지 상 장로신학대학교 기숙사 증축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법률 제88조 및 동법시행령 제 9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학교) 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동법 제91 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 관계도서는 광진구청 건축행정과(☎ 450-1390)에 비치하여 토지(건축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6년 3월 2일

광진구청장

1. 사업 시행지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353번지외1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학

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3. 사업규모
 가. 사업대지면적 : 56,424㎡
 나. 사업 연면적 : 41,352.88㎡
 다. 사업변경 내용
 1) 장로회신학대학교 기숙사(명성관/소
 망관)증축공사
 - 지하1층 연면적125.25㎡(증축)
 라. 주용도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교)
 4.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 : 학교법인 장로회신학대학교
 나. 주 소 :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353
 번지의 1필지

◆ 중랑구고시 제2006-14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1.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353-1번지
 일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도로)결정건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
 에관한법률 제30조, 제32조, 제139조와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27조 및 서울
 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
 를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도시정
 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2006년 3월 2일
 중 랑 구 청 장

가.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형도면 조서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 경	변경후		
신설	주차장	중랑구 망우동 353-1번지일대	-	증)1,467	1,467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도시계획시설(도로)

구분	면 적(㎡)			기 능	연 장 (m)	시 점	종 점	사용 형태	비 고
	등급	류 별	폭 원						
신 설	소로	3	4m	국지도로	11	중랑구 망우동 353-11	중랑구 망우동 353-22	일반도로	

나. 지형도면 : 게재생략(서울특별시 중랑구
 청 도시정비과 비치도면과 같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랑구청 도시정비
 과(490-3384~6)에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 성북구고시 제2006-15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및 세부조성
 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지형도면승인
 서울특별시고시제2006-42호(2006.2.9)
 로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조성계획 변
 경결정된 성북구 정릉동 산16-1호 일대(서
 경대학교)와 성북구 정릉동 산 16-36호 일
 대(대일외고·대일여자 정보산업고)에 대하

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7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6년 3월 2일

성 북 구 청 장

1. 결정(변경) 취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과 수인관·정릉관 편입에 따른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임.

2.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조성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지형도면승인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학교	대학	성북구 정릉동 산16-1일대	41,746	증)8,072	49,818	- 대일외고·대일여자정보고부지편입(증 : 6,466m ²) - 대학교인접부지편입(증 : 1,603m ²) - 면적정정(증 : 3m ²)
변경	학교	고등 학교	성북구 정릉동 산16-36일대	25,214	감)6,438	18,776	- 서경대 편입면적제척(감 : 6,466m ²) - 일부토지 편입(증 : 28m ²)

나.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조서

1) 토지이용계획 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적(m ²)	구 분	토지이용계획(m ²)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학교(대학)	성북구 정릉동 산16-1일대	49,818	본 교 캠퍼스	계	41,172	증) 6,469	47,641	
					건축부지	16,243.84	증) 3,462.96	19,706.8	
					녹지부지	5,787.12	증) 94.93	5,882.05	
					도로 및 주차장부지	10,931.00	증) 1,793.71	12,724.71	
					운동장부지	8,210.04	증) 1,117.40	9,327.44	
				제2캠퍼스	계	574	증) 383	957	
					건축부지				
					녹지부지	574	감) 574		
					도로 및 주차장부지		증) 957	957	
					운동장부지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	구분	토지이용계획(㎡)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학교 (대학)	성북구 정릉동 산16-1일대	49,818	제3캠퍼스	계		증) 456	456	
					건축부지				
					녹지부지				
					도로 및 주차장부지		증) 456	456	
					운동장부지				
				제4캠퍼스	계		증) 764	764	
					건축부지				
					녹지부지				
					도로 및 주차장부지		증) 764	764	
					운동장부지				

2) 건축계획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범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38.91%이하	41.37%이하	234.97%이하	234.1%이하	12층이하	12층이하	본교캠퍼스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	12층이하	7층이하	제2캠퍼스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	-	-	-	-	7층이하	제3캠퍼스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	-	-	-	-	7층이하	제4캠퍼스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3) 변경 건축물 조서

구분	건물명	건축면적(㎡)		연면적(㎡)		건물높이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편입	정릉관	-	1,558.21	-	9,010.35	-	지하1/지상7	
편입	수인관	-	1,881.44	-	4,688.27	-	지상4	

※ 단, 건축물 규모, 배치 등 상세내용은 고시도면에 의함.

3.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 | 4.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 920-3723),

재무국 지적과(☎ 920-3235) 및 해당 동 사무소(정릉제4동사무소 ☎ 919-8205 ~8)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강북구고시 제2006-12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강북구공고 제2006-53(2006. 2.2)호로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 계획열람공고한 『미아8동 867~763번 지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을 시행코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 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토목치수과(☎ 901-6216) 및 건설관리과(☎ 901-620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6년 3월 2일
강 북 구 청 장

가. 사업개요

연번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지의 위치	규 모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비고
1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미아8동 867~763번지간 도로개설	미아8동 867-88 ~76324	B=6m L=15m	서울특별시강북구고시 제37호 (2005. 6. 29)	

- 나. 사업의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서울시 강북구 수유3동 192-59)
- 다. 사업기간 : 인가일로부터 2년
- 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소유권과 소유권이외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의 성명 주소 :

- 별첨
- 마.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 강북구 토목치수과 및 건설관리과에 비치
 -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 토목치수과 (전화 901-62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사업 시행자 : 강북구청장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개설)
- 사업명 : 미아8동 867~763번지간 도로개설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1	미아8동 867-196	대	40	40	서울특별시					

사용 또는 수용할 물건조서

- 사업 시행자 : 강북구청장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개설)
- 사업명 : 미아8동 867~763번지 간 도로개설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 조	수량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1	미아동 867-88	건 물	세멘브로크조	1㎡	한승훈	서울 강북구 미아8동 762-115				무허가
2	미아동 867-88	건 물	세멘브로크조	27㎡	심정보	서울 강남구 역삼1동 834-41				무허가 11305 등재건물-7014
3	미아동 867-88	건 물	세멘부르크조	22㎡	김태영	서울 금천구 독산동 1140 독산동중앙하이츠빌 102-1002				
4	미아동 763-25	화장실	세멘부르크조	2㎡	박인철	서울 용산구 보광동 265-1154 다세대주택 1층 3호				
		기타 지장물		1식						

◆ 은평구고시 제2006-1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354호(1990.10.24)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 및 서울특별시은평구고시 제29호(1991.10.8)로 지적승인된 “녹번동 85의1~118의 82간”도시계획시설(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3호(1969.1.18)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된 “응암동 76의2~42의7간”도시계획시설(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4호(1991.1.7)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서울특별시은평구고시 제5호(1991.3.5)로 지적승인된 “갈현동 252의1~267간”도시계획시설(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354호(1990.10.24)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 및 서울특별시은평구고시 제4호(1992.3.7)로 지적승인된 “대조동 91의19~89의92간”도시계획시설(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354호(1990.10.24)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

- 및 서울특별시은평구고시 제4호(1992.3.7)로 지적승인된 “대조동 6의9~31의 14간”도시계획시설(도로), 건설교통부고시 제2151호(1966.1.18)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된 “녹번동 28의16~30의 1간”도시계획시설(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354호(1990.10.24)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 및 서울특별시은평구고시 제4호(1992.3.7)로 지적승인된 “신사동 278의13~284의2간”도시계획시설(도로)와 관련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된 토지를 매수코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 같은법률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 토목과 (☎ 350-3525)에 비치하여 토지, 건물
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6년 3월 2일
은 평 구 청 장

가. 사업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지	규 모	사업기간	결정고시일	비 고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 녹변동 85-1~118-82간 도로개설사업	녹변동 120-110 120-105	3㎡ 33㎡	인가일로부터 2년	서울특별시고시 제354호 (1990.10.24)	매수청구 토지 보상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 응암동 76-2~42-7간 도로개설사업	응암동 42-87	21㎡	인가일로부터 2년	서울특별시고시 제3호 (1969.01.18)	매수청구 토지 보상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 갈현동 252-1~267간 도로개설사업	갈현동 272-1	89㎡	인가일로부터 2년	서울특별시고시 제4호 (1991.01.07)	매수청구 토지 보상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 대조동 91-19~89-92간 도로개설사업	대조동 89-288, 89-289	17㎡ 10㎡	인가일로부터 2년	서울특별시고시 제354호 (1990.10.24)	매수청구 토지 보상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 대조동 6-9~31-14간 도로개설사업	대조동 9-67	23㎡	인가일로부터 2년	서울특별시고시 제354호 (1990.10.24)	매수청구 토지 보상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 녹변동 28-16~30-1간 도로개설사업	녹변동 30-4	47㎡	인가일로부터 2년	건설교통부고시 제2151호 (1966.01.18)	매수청구 토지 보상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 신사동 278-13~284-2간 도로개설사업	신사동 284-1	213㎡	인가일로부터 2년	서울특별시고시 제354호 (1990.10.24)	매수청구 토지 보상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 녹변동 85-1~118-82간 도로개설사업	녹변동 120-104	14㎡	인가일로부터 2년	서울특별시고시 제354호 (1990.10.24)	매수청구 토지 보상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 대조동 91-19~89-92간 도로개설사업	대조동 89-8	43㎡	인가일로부터 2년	서울특별시고시 제354호 (1990.10.24)	매수청구 토지 보상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 신사동 278-13~284-2간 도로개설사업	신사동 287-5	99㎡	인가일로부터 2년	서울특별시고시 제354호 (1990.10.24)	매수청구 토지 보상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 대조동 6-9~31-14간 도로개설사업	대조동 9-77	32㎡	인가일로부터 2년	서울특별시고시 제354호 (1990.10.24)	매수청구 토지 보상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 대조동 6-9~31-14간 도로개설사업	대조동 9-84	11㎡	인가일로부터 2년	서울특별시고시 제354호 (1990.10.24)	매수청구 토지 보상

나.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1) 주 소 : 은평구 녹변동 84번지
- 2) 성 명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의 지번·

지목,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
세 : 따로붙임 조서 참조

라.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보상법
제2조5항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따

로붙임 조서 참조

- 마. 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
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9
조에 의함

토 지 조 서

사업명 : 녹번동 85-1~118-82간 도시계획사업(도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실제 이용 상황	편입 면적 (㎡)	소유자 지 분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의 종류	
1	녹번동	120-110	대	3		3	1	은평구 녹번동 120-8	이운재	중구 남대문로 2가 111-1	우리은행 불광동지점	근저당권 설정	
										은평구 녹번동 120-8호 4층	유 정	가압류	
2	녹번동	120-105	대	33		33	1	은평구 녹번동 120-8	이운재	중구 남대문로 2가 111-1	우리은행 불광동지점	근저당권 설정	
3	녹번동	120-104	대	14		14	1	은평구 녹번동 120-19	오명화				

사업명 : 응암동 76의2~42의7간 도시계획사업(도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실제이용 상 황	편입면적 (㎡)	소유자 지 분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1	응암동	42-87	대	21		21	1	은평구 신사동 6-9	박성진				

사업명 : 갈현동 252의1~267간 도시계획사업(도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실제이용 상 황	편입면적 (㎡)	소유자 지 분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1	갈현동	272-1	대	89		89	1/2	은평구 갈현동 268-60	박동문				
							1/2	은평구 대조동 59-74	최진영				

사업명 : 대조동 91의19~89의92간 도시계획사업(도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실제이용 상 황	편입면적 (㎡)	소유자 지 분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1	대조동	89-288	대	17		17	1	은평구 대조동 89-85	김영식				
2	대조동	89-289	대	10		10	1	은평구 대조동 89-85	김영식				
3	대조동	89-8	대	43		43	1	은평구 대조동 89-213	김지훈				

사업명 : 대조동 6의9~31의14간 도시계획사업(도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실제이용 상 황	편입면적 (㎡)	소유자 지 분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1	대조동	9-67	대	23		23	1	은평구 대조동 6-21	이근영				
2	대조동	9-77	대	32		32	1	은평구 대조동 88-86	김옥영				
3	대조동	9-84	대	11		11	1	은평구 대조동 88-86	김옥영				

사업명 : 녹번동 28의16~30의1간 도시계획사업(도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실제 이용 상 황	편입 면적 (㎡)	소유자 지 분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1	녹번동	30-4	대	47		47	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77 호수마을 306-1104호	최용숙				

사업명 : 신사동 278의13~284의2간 도시계획사업(도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실제 이용 상 황	편입 면적 (㎡)	소유자 지 분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1	신사동	284-1	대	213		213	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653-30 킨스빌타운 102동 202호	정상문				
2	신사동	287-5	대	99		99	1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6 문촌마을 508-1204호	신현무				

물 건 조 서

사업명 : 응암동 76의2~42의7간 도시계획사업(도로)

연번	소재지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 격	수량	실제이용 상 황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비고
						성 명	주 소	
1	응암동 42-66	담장 대문	작벽돌 철 제	1식 1		박성진	은평구 신사동 6-9	

사업명 : 대조동 91의19~89의92간 도시계획사업(도로)

연번	소재지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 격	수량	실제이용 상 황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비고
						성 명	주 소	
1	대조동 89	대문	철제	1		소장호	은평구 갈현동 436-42	

사업명 : 대조동 6의9~31의14간 도시계획사업(도로)

연번	소재지번	물건의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실제이용상황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1	대조동 9-77	대문 담장	철제 적벽돌	1 1식		김옥영	은평구 대조동 88-86	

사업명 : 녹변동 28의16~30의1간 도시계획사업(도로)

연번	소재지번	물건의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실제이용상황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1	녹변동 30-1	대문 담장	철제 적벽돌	2 1식		최용숙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77호수마을 306-1104호	

◆ 서대문구고시 제2006-18호

천연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영천주택재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지형도면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171호(1997.5.18)로 결정되고 제2001-373(2001.11.6)호로 변경 결정된 서대문구 영천동 69번지, 천연동 89번지 일대 천연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하고 천연지구단위계획구역내 서대문구 영천동 69-20번지 일대 영천동특별계획구역

나. 영천동특별계획구역 변경결정

구역명	위치	면적(m ²)			비고
		당초	변경	증	
영천동 특별계획구역	영천동 69-20번지 일대	9,190	11,249.3	2,059.3	

※ 위 변경내용 외에는 기 결정(변경)된 사항과 같음

2. 영천주택재개발구역 지정

가. 정비구역 지정

구분	명칭	위치	면적(m ²)	비고
신규	영천주택재개발구역	영천동 69-20번지 일대	11,249.3	

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천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06년 3월 2일
서대문구청장

1. 천연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가. 변경결정 취지 : 천연지구단위구역내 영천동특별계획구역을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접근로를 정비하기 위하여 인접도로를 편입하는 것임

나. 정비계획의 지정

1) 정비사업의 명칭 : 영천주택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구 분	명 칭	면 적(m ²)	비 율(%)	비 고
합 계		11,249.30	100.00	
정비기반시설	소 계	4,425.30	39.34	
	도 로	3,016.13	26.81	
	공공공지	1,409.17	12.53	
택 지	택 지	6,824.00	60.66	

다.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 치		비 고
	등급	세분류	번호	폭원(m)				기 점	종 점	
신설	중로	3	2	12	집산도로	일반도로	100	영천동 69-65	영천동 69-48	
기정	중로	3	42	12	집산도로	일반도로	1,700	영천동 66-15	천연동 48-2	

2)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조서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m ²)	비 고
	시설명	세분류			
신 설	공공공지	공공공지	영천동 69-20번지 일대	1,409.17	

3) 도시계획시설(시장) 결정조서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m ²)	최초결정일	비 고
	시설명	세분류				
폐 지	시 장	정기시장	영천동 69-40번지 일대	3,240	서고시제462호(1979.11.7)	

4)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명 칭	면적(m ²)	명칭	면적(m ²)		계	존치	개수	철거후 공동 주택 신축	철거 이주
신설	영천주택 재개발구역	11,249.3	택지	6,824	영천동 69-20번지 일대	82			82	

5) 건축물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면 적 (㎡)	건축시설 계획			
				주된용도	건폐율	용적률	층수(높이)
신설	택지	영천동 69-20일대	6,824	판매시설 공동주택	60% 이하	400% 이하	23층 이하 (77m)
주택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전용면적 85㎡ 이하 : 총 건설 세대수의 80% 이상				
건축시설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관련법규에 의함				

- 라. 사업시행예정시기
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 이내
- 마.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방법
- 바. 관련도면 : 생략(서대문구청 도시개발과 비치도면과 같음)

- ◆ 서대문구청 고시 제2006-19호
도시계획시설사업(광장)실시계획 작성
- 1. 조선총독부고시 제722호(1936.12.26)로 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결정된 『신촌역광장조성』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률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률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고시코자 합니다.
- 2. 관계서류는 서대문구청 토목하수과 및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토지·건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6년 3월 2일
서대문구청장

가. 사업개요 :

사업의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지	규모	사업기간	결정고시	비고
도시계획사업(광장) "신촌역광장조성"	대현동 121-35 외 12필지	교통광장(서측) A=3,270.8㎡	고시일로부터 2007.12.31	총독부고시 제722호 (36.12.26)	

- 나.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 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 [따로붙임 조서 참조]
- 라.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 5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성명 : [따로붙임 조서 참조]
- 마. 기타 의견 및 상세한 사항은 서울특별

시 서대문구청 토목하수과(공사 : ☎ 330-1764) 및 건설관리과(보상 : ☎ 330-140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 사업명 : 신촌역 광장 조성

연 번	지 번	지 목	면 적 (㎡)	수용편입 면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신촌동 74-25	철	719	719	국 (철도청)				
2	대현동 121-35	대	45.5	45.5	서울 특별시				
3	대현동 121-36	구거	23	23	서대 문구				
4	대현동 60-103	도로	111.4	111.4	국 (건설부)				
5	대현동 121-24	대	929.6	929.6	서울 특별시				
6	대현동 121-25	대	14.9	14.9	박희준	서대문구 대현동 121-25			
7	대현동 121-23	대	237.4	237.4	장복희	성남.분당.서현동 308 효자촌 624-102	중소기업 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50 (신촌지점)<채무자:김원중>	
8	대현동 121-22	대	221.5	221.5	장복희	성남.분당.서현동 308 효자촌 624-102	(주) 조흥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 1가 14 (반포남지점)	
9	대현동 121-2	대	206.3	206.3	김병만	서대문구 대현동 121-2	(주) 평화은행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3-1 (논현동지점)<채무자:김병만>	
							(주) 평화은행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3-1 (논현동지점)<채무자:동서전 기주식회사>	
10	대현동 121-21	대	225.5	225.5	송성의	과천시 별양동 6 주공㉠ 501-703	(주)건영유 통건설사업	서울 노원구 중계동 506-1 <채무자:박우영>	
							(주)건영	서울 서초구 잠원동 46-3	
							(주)건영 종합건설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55-1 무궁화상가동	
11	대현동 121-12	대	217.9	217.9	우국현	서대문구 대현동 143-7	(주) 하나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1가 101-1	
12	대현동 121-11	대	144.8	144.8	최용석	서대문구 연희동 195-12	(주) 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 9-1 (주택신촌지점)	
							신촌 새마을금고	서대문구 창천동 31-14	
13	대현동 121-10	대	174.5	174.5	우오현	광주 서구 화정동 1072 금호타운 103-809	(주) 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 9-1 (주택광주기업금융지점)	

물 건 조 서

○ 사업명 : 신촌역 광장 조성

연번	지번	물건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	수용면적 (㎡)	실제이용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대현동 121-24	건물	철·콘		53.19	1층	서울특별시				창천가압장	
		건물	철·콘		53.19	2층						
2	대현동 121-24 (3호)	건물			23.5	1층	김용욱	서대문구 대현동 27-22			무허가	
		화장실			1.8	1층						
3	대현동 121-2	가건물			17.9	1층	정희철	서대문구 대현동 121-2			무허가 (토지 121-24)	
		건물			32.4	1층						
4	대현동 121-24 (1호)	건물			64.4	1층	최승찬	서대문구 대현동 121-24	정리회사 (주)건영	서울. 서초구 잠원동 46-3		
		창고			6.2	1층						
		화장실			2.3	1층			서울상수도 사업본부 (영양수사업소)			
		담장			1식							
		대문			1식							
5	대현동 121-24	창고			11.8		유재경	서대문구 대현동 121-24			가설 건축물 (보상제외)	
		창고			7.5							
		건물			145.1	1층						
		가건물			77.9							
		건물			145.1	2층						
		건물			145.1	3층						
		건물			136	지하						
		계단			1식							
6	대현동 121-2 제2호	가건물			19.9		정민아	강서구 염창동 295 강변성원(A) 102-806			토지 (대현동 121-24)	
		건물			65	1층						
		가건물			3.4							
		창고			3.4							
		창고			2.5							
		가건물			4.3							
		건물			14.5							
		화장실			2.2							무허가 (보상제외)
		건물			11							무허가 (보상제외)
		대문			1식							

연번	지번	물건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	수용면적 (㎡)	실제이용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7	대현동 121-2	건물			27.7		김병만	서대문구 대현동 121-2	(주) 평화은행	강남구 역삼동 823-1, 논현동지점 (채무자:김병만)	
		건물			53.2						
		건물			13						
		창고			5.2						
		가건물			28.5	(주) 평화은행			강남구 역삼동 823-1, 논현동지점 (채무자: 동서전기 주식회사)		
		건물			48.2						
		대문			1식						
		담장			1식						
8	대현동 121-21	건물			49.1		송성의	과천시 별양동 6 주공㉠ 501-703			
		가건물			16						
		건물			54.5						
		화장실			1.3						
		건물			16.2						
		건물			23.1						
		대문			1식						
		담장			1식						
9	대현동 121-12	건물			115.8	1층	고석재	용인시 기흥읍 상갈리 461 금화마을 대우현대㉠ 101-1203	(주) 하나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1가 101-1 (신촌역지점) <채무자:우국현>	
		건물			89.2	1층					
		건물			64	2층					
		가건물			8.5	2층					
		대문			1식						
10	대현동 121-10	가건물			16.1		이상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287-7			무허가
		건물			92.6						
		건물			89.3						
11	대현동 121-10	건물			37.1	1층	우오현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072 금호타운 103-809	(주) 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 9-1 (주택광주기업금융지점)	
		건물			120.7	1층					
		건물			120.7	2층					
		건물			103.4	3층					
		옥탑			9	4층					
12	대현동1 121-11	건물			135.9	1층	최용석	서대문구 연희동 195-12	(주) 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 9-1(주택신촌지점)	
		가건물			4.8	1층					
		건물			135.9	2층			신촌 새마을금고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31-14	

◆ 양천구고시 제2006-7호
 도시계획시설사업(화물자동차정류장) 실시계획 변경(시행자 변경)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484호('79.11.23)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승인고시된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364호('84.6.25)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되고 양천구고시 제2005-49호('05.6.27)호로 변경인가된 도시계획시설사업(화물자동차정류장) 실시계획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변경(시행자 변경)인가하고, 동법률 제91조 및 동법률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주택과(☎ 2650-3380~4)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6년 3월 2일
 양 천 구 청 장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양천구 신정동 743일원 [변경없음]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사업(자동차정류장), 서부트럭터미널 진입로 개설사업[변경없음]
- 다. 면적 및 규모 [변경없음]
 - 시행면적 : 112,154㎡
 - 사업내용 : 화물터미널 진입도로(폭20m)개설 등
-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 소 : 양천구 신정동 812 [변경없음]
 - 성 명 : [변경있음]
 - 변경전 : (주)서부트럭터미널 대표 승항배
 - 변경후 : (주)서부트럭터미널 대표 승만호
- 마. 사업의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경없음]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 변경인가일
 - 준공예정일 : 2007. 6. 25

- 바. 토지조서 및 인가도서 [변경없음]
- 사. 법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아.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계산서 [변경없음]

◆ 강서구고시 제2006-161호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299(2005.7.27)호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로 결정고시, 서울특별시강서구 공고 제2006-62호(2006.1.26)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 공람공고한 “겸재미술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동법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6년 3월 2일
 강 서 구 청 장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234번지외 16필지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사업
 - ② 사업의 명칭 : 겸재미술관 건립
- 다. 사업 시행규모
 - ① 부지면적 : 3,561㎡
 - ② 시설면적 : 연면적 3,123㎡내외(지하2층, 지상3층)
- 라.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①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980-16
 - ② 성 명 : 강서구청장
- 마. 사업기간 : 인가일로부터 2년
-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물건의 지번, 지목,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

리명세 : 따로붙임
 사.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14조의 관계인 주소·성명 : 따로붙임
 아.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문화체육과(☎ 2600-6456, 담당 : 박승국)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 사업의 종류 : 겸재미술관 건립공사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수용할 토지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의 권리명세	
1	가양동 243-1	임야	284	284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향교재단	강서구 가양동 234				243에서 분할
2	가양동 422-82	도로	36	36	국(건설부)					422-8에서 분할
3	마곡동 9-2	답	123	123	강서구	강서구 화곡동 980-16				
4	마곡동 9-3	대	213	213	김재하	강서구 가양동 193-3	국민은행	중구 남대문로 2가 9-1(가양동지점)	근저당권 설정	9에서 분할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향교재단	강서구 가양동 234	(주)휘닉스 벤딩서비스	강남구 삼성동 141-32 보광빌딩 6층	전세권 설정	
5	마곡동 9-4	대	72	72	김재하	강서구 가양동 193-3	국민은행	중구 남대문로 2가 9-1	근저당권 설정	9에서 분할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향교재단	강서구 가양동 234	(주)휘닉스 벤딩서비스	강남구 삼성동 141-32 보광빌딩 6층	전세권 설정	
6	마곡동 10-7	임야	95	95	강삼원 의 2인	양천구 신월동 490-3	신용보증 기금	마포구 공덕동 254-5(구로공단지점)	대위자	
7	마곡동 10-8	임야	71	71	강삼원 의 2인	양천구 신월동 490-3	신용보증 기금	마포구 공덕동 254-5(구로공단지점)	대위자	
8	마곡동 10-9	임야	224	224	강삼원 의 2인	양천구 신월동 490-3	신용보증 기금	마포구 공덕동 254-5(구로공단지점)	대위자	10-4에서 분할
9	마곡동 12-8	전	476	476	국(재무부)					12-2에서 분할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수용할 토지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의 권리명세	
10	마곡동 14-1	전	473	473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향교재단	강서구 가양동 234				
11	마곡동 14-7	전	565	565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향교재단	강서구 가양동 234				
12	마곡동 14-8	전	294	294	강명천	강서구 마곡동 14-8				
13	마곡동 14-9	전	222	222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향교재단	강서구 가양동 234				
14	마곡동 14-14	전	103	103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향교재단	강서구 가양동 234				
15	마곡동 14-15	대	238	238	김홍태	강동구 신천동 20 아파트 39동 36호				
16	마곡동 14-37	대	32	32	고수간	강서구 마곡동 14-2	조흥은행	중구 남대문로 1가 14(남대문지점)	근저당권 설정	14-2에서 분할
17	마곡동 14-38	대	8	8	강주원	강서구 마곡동 14-8				14-10에서 분할
18	마곡동 407-22	도로	32	32	국(건설부)					407-6에서 분할

물 건 조 서

○ 사업의 종류 : 겸재미술관 건립공사

연번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규격 및 구 조	수 량 면 적	실 제 이용상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의 권리명세	
1	마곡동 9-3 9-4	담장	브 릅	1.6m×30.5m 1.4m×18.2m 0.7m×3m	담장	김재하	강서구 가양동 193-3	국민은행	중구 남대문로 2가 9-1 (가양동지점)	근저당권 설정	9에서 분할
		중국단풍	H3.5×R12	11주							
		"	H4.0×R15	3주							
		"	H4.0×R18	1주							
		자작나무	H2.5×B4	2주							
"	H3.0×B6	4주			(주)휘닉스 벤딩서비스	강남구 삼성동 141-32 보광빌딩 6층	전세권 설정				

연번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규격 및 구 조	수 량 면 적	실 제 이용상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의 권리명세	
1	마곡동 9-3 9-4	은행나무	H2.5×B4	6주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향교재단	강서구 가양동 234				9에서 분할
		잣나무	H2.0×W1.0	5주							
		"	H4.0×W2.0	1주							
		섬잣나무	H2.5×W1.0	2주							
		소나무	H3.5× W1.5×R12	2주							
2	마곡동 12-8	가설물	천막/파이프	53㎡	야적장	미상	미상				12-2 에서 분할
3	마곡동 14-1 14-7, 14-9, 14-14	가설물	철판/목재	38㎡	사무실	이재중	강서구 마곡동 327-53 신안연립 4동 209호				양천 공업사
		가설물 (바닥 콘크리트 포함)	철판/철골	96㎡	작업장 및 야적장						
		에어컨		1식							
		냉장고		1식							
		정수기		1식							
		사무실 집기류 일체		1식							
		이동식화 장실		2동							
		담장	합석	3m×20m 2m×22m	담장						
대문	파이프/합석	1.7m×5.4m	대문								
4	마곡동 14-1	계근대		1식	계근대	박찬중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855 참이슬④ 204동 102호				진흥 자원
		유압프레스	30톤	1대							
		공구함	철제	2.0m×2.5m							
		캐비닛	철제	1식							
		고물적치함	철판	1식							
		고물적치	고철류	약 50톤							

연번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규격 및 구 조	수 량 면 적	실 제 이용상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의 권리명세	
5	마곡동 14-1	유압프레스	50톤	1대		김병현	양천구 신정동 314 목동신사가지A 812-101				대륜 자원
		콤팩트샤	기계장비	2대							
		전선탈피기	"	1대							
		용접기	"	1대							
		분쇄기	"	1대							
		공구함	철판	1.3m×1.3m							
		변압기		1식							
		고물적치	고철류	약 300톤							
6	마곡동 14-37	주택	스라브/ 세멘벽돌	59㎡	작업장 및 휴게시설	고수간	강서구 마곡동 14-2	조흥은행	중구 남대문로 1가 14 (남대문지점)	근저당권 설정	14-2 에서 분할
		가설물	스라브/ 세멘벽돌	3㎡	창고 및 화장실						
		가설물	스레트/벽돌	24㎡	작업장						
		변압기		1식							
		선반	기계장비	3대							
		콤팩트샤	"	2대							
		보루방	"	2대							
		연마기	"	3대							
		계량기		1식							
		공구함	앵글	1식							
		공구함	철판	1식							
철제책상		2대									
7	마곡동 14-8	주택	목조	128㎡	주거	강명천	강서구 마곡동 14-8				무허가
		가설물	스레트/브릭	8㎡	화장실 및 창고						
		대문		1식	출입문						
8	마곡동 14-15	주택	목조	93㎡	주거	이서준	마포구 성산1동 21-25호 신명빌라 203호				무허가
		대문		1식	출입문						

영 업 권 조 서

○ 사업의 종류 : 겸재미술관 건립공사

연번	소재지 지번	업 소 명	업 종	대표자	주 소	비고
1	마곡동 14-1	진흥자원	재활용품 수집	박찬중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855 참이슬A 204동 102호	
2	마곡동 14-1	대륜자원	재활용품 수집	김병현	양천구 신정동 314 목동신시가지A 812-101	
3	마곡동 14-2	고려연마	볼트, 네트 제조	고수간	강서구 마곡동 14-2	
4	마곡동 14-1, 14-7, 14-9, 14-14	양천공업사	기계부품, 중고중기, 무역, 고철	이재중	강서구 마곡동 327-53 신안연립 4동 209호	

◆ 구로구고시 제2006-10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공지)
결정 및 지형도면작성고시

1. 구로구 고척1동 76-363번지 및 개봉2동 305-18번지의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결정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가.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결정 및 지형도면작성고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률시행령 제25조, 제27조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공지)결정 및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6년 3월 2일
구 로 구 청 장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공공공지	고척1동 76-363번지	-	54	54		
신설	공공공지	개봉2동 305-18번지	-	152.4	152.4		

나. 관련도면 : 생략(구로구청 도시개발과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 동작구고시 제2006-13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조성)실시계획
변경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289(2005.9.29)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65(2005.10.6)호로 지형도면 승인되었으며 동작구고시 제2005-78(2005.12.1)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된 『노량진근린공원(송학대) 조성사

업』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 같은법률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 작성하고 같은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률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갈음하며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환경녹지과(☎ 820-1395)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6년 3월 2일
동 작 구 청 장

- 가. 사업개요
-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변경없음)
 - 사업의명칭 : 노량진근린공원(송학대공원) 조성사업(변경없음)
 -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325-2번지의 4필지(변경없음)
 - 면 적 : 10,032㎡ (변경없음)
 - 결정고시 : 총독부고시 제208호(1940. 3. 12)(변경없음)
- 나.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변경없음)

- 다.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2년(변경없음)
- 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변경사항 따로붙임)
- 마.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및 성명(변경사항 따로붙임)
- 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변경없음)

토 지 조 서

○ 소재지 : 노량진동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주 소	성명	주 소	성명	소유자 이외의 권리 및 내용	
1		변		경	없	음				

건 물 조 서

○ 소재지 : 노량진동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격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주 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자이외의 권리 및 내용	
1~3번, 8~10번 변경없음											
4	당초	225-161 (225-311)	공작물	스라브/ 벽돌	36	중구 예장동 2-82	(주)한엔 컴퍼니				
	변경	225-161	공작물	스라브/ 벽돌	36	중구 예장동 2-82	(주)한엔 컴퍼니				
5	당초	225-248 (225-294) (225-311)	공작물	판넬	15	중구 예장동 2-82	(주)한엔 컴퍼니				
	변경	225-161	공작물	판넬	15	서울 용산 서빙고동 241-21 번지 신동아④14동 707호	허일숙				
6	당초	225-161	창고	스라브/ 벽돌	8	중구 예장동 2-82	(주)한엔 컴퍼니				
	변경	225-161	창고	스라브/ 벽돌	8	서울 용산 서빙고동 241-21 번지 신동아④14동 707호	허일숙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격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주 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자이외의 관리 및 내용	
7	당초	225-248 (225-294)	정자		30	서울 용산 서빙고동 241-21번지 신동아A 14동 707호	허일숙				
	변경	225-161	정자	목재	30	서울 용산 서빙고동 241-21번지 신동아A 14동 707호	허일숙				
11	당초	225-161	보일러실	스라브/ 벽돌	4	중구 예장동 2-82	(주)한엔 컴퍼니				
	변경	225-161	보일러실	스라브/ 벽돌	4	서울 용산 서빙고동 241-21번지 신동아A 14동 707호	허일숙				
12	당초	225-291	농구장		1식	서울 용산 서빙고동 241-21번지 신동아A 14동 707호	허일숙				
	변경	225-161	농구장		1식	서울 용산 서빙고동 241-21번지 신동아A 14동 707호	허일숙				
13	당초	225-294	대문		1식	중구 예장동 2-82	(주)한엔 컴퍼니				
	변경	225-161	대문		1식	중구 예장동 2-82	(주)한엔 컴퍼니				
14	당초	225-161	기타 (수목등)		1식	중구 예장동 2-82	(주)한엔 컴퍼니				
	변경	225-161	수목		130 주	중구 예장동 2-82	(주)한엔 컴퍼니				
15	당초										
	변경	225-161	계단	석재	2식	중구 예장동 2-82	(주)한엔 컴퍼니				
16	당초										
	변경	225-161	사자상	석재	2개	중구 예장동 2-82	(주)한엔 컴퍼니				
17	당초										
	변경	225-161	물탱크		2개	중구 예장동 2-82	(주)한엔 컴퍼니				
18	당초										
	변경	225-161	철봉	철재	1식	중구 예장동 2-82	(주)한엔 컴퍼니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격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주 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자이외의 관리 및 내용	
19	당초										
	변경	225-161	정원석	석재	1식	중구 예장동 2-82	(주)한엔 컴퍼니				
20	당초										
	변경	225-161	석축		1식	중구 예장동 2-82	(주)한엔 컴퍼니				
21	당초										
	변경	225-161	화단		1식	중구 예장동 2-82	(주)한엔 컴퍼니				
22	당초										
	변경	225-161	건물	스라브/ 벽돌	22	중구 충무로 1가 22	(주) 유신사	중구청 세무1과		압류	

영 업 권 조 서

○ 소재지 : 노량진동

연 번	소재지 지번	업소명	업 종	소 유 자		비 고
				주 소	성 명	
	번	경	없	음		

◆ 관악구고시 제2006-16호

공용건축물 건축협의 및 도시계획시설
(학교)실시계획변경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445(2005.12.29)호로 서울대학교 세부조성계획 결정고시 된 도시계획시설(학교)에 대하여 건축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협의 및 도시계획시설(학교)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관악구청 건축과(☎ 880-388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6년 3월 2일

관 악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 : 관악구 신림동 산 56-1번지 일대
2.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사업(학교)
3. 사업의명칭 :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시설 확충
4.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가. 사업시행 면적 : 3,895,659㎡
 - 나. 사업변경 내역
 - 1) 건 물
 - 당 초 : 1,045,162.27㎡(197동)
 - 변 경 : 1,045,720.04㎡(197동)

2) 변경내용
가) 건물(증축)

구 분	건 축 면 적(m ²)			연 면 적(m ²)			비 고
	당 초	변 경	증 감	당 초	변 경	증 감	
사회과학연구동	3,840.17	4,125.09	284.92	18,492.95	19,050.72	557.77	증축

- 5.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 관악구 신림동 산56-1 서울대학교총장 정운찬
- 6.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 ~ 2006.6.30
- 7.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 별첨
-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재지·지번·지목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사용할 토지 건축물의 소재지	지 번	지 목	소유권이외의권리
관악구 신림동 산56-1일대 관악구 봉천동 산4-2일대	좌 동	학교용지	소유자: 국(교육인적자원부) 재산관리관: 서울대학교총장

- 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9조(공공시설 등의 귀속)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사항 : 해당없음

◆ 강남구고시 제2006-15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 1. 강남구 고시 제2005-78호(2005.12.1)의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 변경인가된 사항에 대하여 지적공부 정리에 따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법률시행령 제97조,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6년 3월 2일
강 남 구 청 장

- 가. 사업시행지 : 강남구 도곡동 902-19~도곡동 894-4 간
※ 강남구 도곡동 902-125 번지 (누락분 추가)

나. 사업의종류 및 명칭 :

- 종 류 - 도시계획사업(도로 : 기 완료)
- 명 칭 - 동신아파트주변 도로개설공사

다. 사업의 규모 : B=12m, L=255m (도로개설 기 완료)

- 라.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년월일 : 기 완료
-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건축물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따로붙임

아. 관계서류는 강남구청 토목과(☎ 02-2104-2132), 건설관리과(☎ 02-2104-201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연번	구분	자번	지목	면적(m ²)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 고
					성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의 권리명세	
	추가	도곡동 902-125	대지	32	오세종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467번지 타워팰리스A A동 1906호				누락분 추가

지장물 조서

소재지 지 번	구분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량 (㎡)	실제이용 상 황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 소	권리의 종류	주소	성명	
도곡동 902-125	추가	계단	콘크리트	1	출입계단	오세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467번지 타워팰리스A A동 1906호				누락분 추가

◆ 강남구고시 제2006-16호

도시계획사업(주차장) 시행자 지정(변경)

1. 서울특별시강남구고시 제2005-30호(2005. 5.26)로 도시계획시설 중복(공원, 주차장)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된 학여울 및 개포동근린공원내 지하주차장 시설 건립의 도시계획시설(주차장)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86조, 같은법 시행령 제96조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주차장) 시행자를 변경 지정하고 같은법 제86조 제6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강남구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에서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6년 3월 2일

강 남 구 청 장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강남구 개포동 182-1,4,5, 183-1,2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 명 칭 : 학여울 및 개포동근린공원내 지하주차장 조성
- 다. 사업규모 : 공원부지내 주차장 조성 (지하3층/지상1층)
 - 건축면적 : 232.95㎡(연면적 : 5,135.62㎡)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 유통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 주차대수 : 자주식 149대
-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당 초
 - 성명 : 한국주차설비공업협동조합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4동83-16
 - 변 경
 - 성명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1
-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2006.2.28까지

◆ 송파구고시 제2006-9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승인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339호(2005. 11.10)로 실시계획승인 된 서울 동남권 유통단지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법률 시행령 제27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는 송파구 도시정비과(☎ 410-338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6년 3월 2일

송 파 구 청 장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서울동남권 유통단지	송파구 문정동 280일원	511,084㎡	서고시-339(2005.11.10) 실시계획승인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511,084	-	511,084	100.0	
상업지역	소 계	-	511,084	511,084	100.0	
	유통상업지역	-	511,084	511,084	100.0	
녹지지역	소 계	511,084	감511,084	-	-	
	생산녹지지역	312,380	감312,380	-	-	
	자연녹지지역	198,704	감198,704	-	-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도로 결정(변경)조서

○ 총괄표

구 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 고	
합 계		-	10	3,153 (3,210)	79,025 (80,603)		
일반도로	계	-	9	2,958 (3,015)	77,076 (78,654)		
	광로	소계	-	-	-	3,624	
		2류	-	-	-	3,624	송파대로 완화차로 및 버스베이 등
	대로	소계	-	5	1,643 (1,700)	52,361 (53,939)	
		2류	30	3	1,413	45,659	
		3류	25	2	230 (287)	6,702 (8,280)	
	중로	소계	-	2	806	16,298	
		1류	20	2	806	16,298	
	소로	소계	-	2	509	4,793	
		1류	11	1	173	1,842	
		2류	8.5	1	336	2,951	
	특수도로	소로 1류	10	1	195	1,949	보행자전용도로

주 : 1) 연장과 면적에는 지구외 구간인 장지천 횡단교량(연장 57m, 면적 1,578㎡)을 포함하였으며, 각 시설별 면적에는 가각 및 완화차로 등의 면적을 포함
 2) ()는 지구외를 포함한 수치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광로	2	29	50	주간선 도로	8,000	잠실대교	성남시계	일반도로	-	건고시198호 '71.4.7	송파대로
변경	광로	2	29	50	주간선 도로	8,000	잠실대교	성남시계	일반도로	-		완화차로
신설	대로	2	1	30	보조간선 도로	725	송파대로	북측 구역계	일반도로	-		
신설	대로	2	2	30	보조간선 도로	335	북측 구역계	대로2-1	일반도로	-		
신설	대로	2	3	30	보조간선 도로	353	송파대로	서측 구역계	일반도로	-		
신설	대로	3	1	25	집산도로	161 (218) ¹⁾	대로2-1	대로2-3	일반도로	-		
신설	대로	3	2	25	집산도로	69	대로2-3	-	일반도로	-		
신설	중로	1	1	20	집산도로	281	대로2-1	대로2-2	일반도로	-		
신설	중로	1	2	20	집산도로	525	서측 구역계	소로2-1	일반도로	-		
신설	소로	1	1	11	보조간선	173	교통광장	중로1-2	일반도로	-		
신설	소로	1	2	10	특수도로	195	송파대로	대로2-2	보행자 전용	-		
신설	소로	2	1	8.5	보조간선	336	외곽순환 도로	중로1-2	자동차 전용도로	-		

주 : 1) 광로2-29은 구역내 완화차로 설치로 인한 변경

2) ()¹⁾는 지구외 장지천 교량을 포함한 연장 임

2) 광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88	광장	교통광장	장지동 606 일원	93,942	감1,076	92,866	건고시 제214호 '99.7.8	
변경	189	광장	교통광장	장지동 707-21 일원	31,100	감2,050	29,050	건고시 제899호 '90.12.17	

3)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	-	49,150	49,150		
신설	1	공원	근린공원	문정동 286-1 일원	-	36,508	36,508		
신설	2	공원	근린공원	장지동 224-4 일원	-	12,642	12,642		

주 : 근린공원1에는 저류시설 (3,106㎡) 중복

4)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5개소	1,500	27,034	28,534	-	
소 계				3개소	-	15,213	15,213	-	
신설	1	녹지	경관녹지	문정동 414-2 일원	-	7,942	7,942	-	
신설	2	녹지	경관녹지	장지동 236 일원	-	1,803	1,803	-	
신설	3	녹지	경관녹지	장지동 239-8 일원	-	5,468	5,468	-	
소 계				2개소	1,500	11,821	13,321	-	
신설	1	녹지	완충녹지	장지동 706-14 일원	-	7,210	7,210	-	
변경	2	녹지	완충녹지	장지동 636-7 일원	1,500	4,611	6,111	서고시 737호 '88.9.9	

5) 유수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2개소	-	6,905	6,905		
신설	1	유수지	저류시설	장지동 292-2일원	-	3,106	3,106		
신설	2	유수지	저류시설	장지동 662 일원	-	3,799	3,799		

주 : 유수지1은 근린공원1내에 중복결정

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서울동남권유통단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280 일원	-	511,084	511,084	

라.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 계획 결정조서
 관리계획결정조서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 으로 게재 생략 -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	구 분			비 고
			번호	위 치	면적(㎡)	
	1BL	22,024	1-1	문정동 397-11 일원	10,416	분할가능선에 의해 2개획지로 분할 가능
			1-2	문정동 400-7 일원	9,275	분할가능선에 의해 2개획지로 분할 가능
	2BL	47,814	2-1	문정동 408-1 일원	11,489	분할가능선에 의해 3개획지로 분할 가능
			2-2	문정동 299-8 일원	11,356	분할가능선에 의해 3개획지로 분할 가능
	3BL	66,476	3-1	문정동 309 일원	19,568	분할가능선에 의해 2개획지로 분할 가능
			3-2	문정동 278 일원	39,556	분할가능선에 의해 2개획지로 분할 가능
	4BL	2,108	4	장지동 245-21 일원	2,108	

○ 획지분할가능선이 계획된 획지는 분할가능선에 의해서 분할이 가능하며, 분할된 후 분할전으로의 합병도 가능함

3)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유통시설용지(상류시설용지)

가구 번호	시 설	위 치 (획지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3BL	대규모 점포	3-2	용 도	권장용도: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3호에 의한 대규모점포 및 부대시설 허용용도: 유통상업지역내 설치가능한 용도 불허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5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16호 자동차관련시설 제19호 공공용시설, 제12호 위락시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허용: 600% 이하
				- 권장용도가 주차장을 제외한 연면적의 20%이상을 차지하여야 하며 그 미만일 경우는 미준수 비율에 따라 용적률 패널티 부여 - 패널티량 = 허용용적률 × (20% - 권장용도 점유율(권장용도 준수면적 / 주차장을 제외한 연면적))
			높 이	군용항공기법상 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 적용
건축선	• 건축한계선 - 30m 도로변: 3m - 보행자도로변: 5m			

나) 지원시설용지

가구 번호	위 치 (획지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1BL	1-1	용도	권장용도 : 건축법시행령별표1의 5호에 문화및집회시설중 전시장 허용용도 : 유통상업지역내 설치가능한 용도 불허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5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16호 자동차관련시설 제19호 공공용시설, 제12호 위락시설 * 판매 및 영업시설의 비율은 주차장을 제외한 연면적의 50% 를 초과할 수 없음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허용 : 600% 이하
			- 권장용도가 주차장을 제외한 연면적의 20%이상 차지하여야 하며 그 미만일 경우는 미준수 비율에 따라 용적률 패널티 부여 - 패널티량 = 허용용적률 × (20% - 권장용도 점유율(권장용도 준수면적/주차장을 제외한 연면적))
		높이	군용항공기법상 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 적용
건축선	• 건축한계선 - 40m도로 및 30m도로변 : 3m - 공원변 및 20m도로변 : 2m		
1BL	1-2	용도	권장용도 : 건축법시행령별표1의 11호에 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 허용용도 : 유통상업지역내 설치가능한 용도 및 관광숙박시설 불허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5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16호 자동차관련시설, 제19호 공공용시설 * 판매 및 영업시설의 비율은 주차장을 제외한 연면적의 50% 를 초과할 수 없음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허용 : 600% 이하
			- 권장용도가 주차장을 제외한 연면적의 20%이상 차지하여야 하며 그 미만일 경우는 미준수 비율에 따라 용적률 패널티 부여 - 패널티량 = 허용용적률 × (20% - 권장용도 점유율(권장용도 준수면적/주차장을 제외한 연면적))
		높이	군용항공기법상 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 적용
건축선	• 건축한계선 - 40m도로 및 30m도로변 : 3m - 공원변 및 20m도로변 : 2m		
2BL	2-1 2-2	용도	허용용도 : 유통상업지역내 설치가능한 용도 불허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5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16호 자동차관련시설 제19호 공공용시설 * 판매 및 영업시설의 비율은 주차장을 제외한 연면적의 50% 를 초과할 수 없음

가구 번호	위 치 (획지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2BL	2-1 2-2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허용 : 600% 이하
		높이	군용항공기지법상 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 적용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 - 30m도로변 : 3m - 남북방향 공원변 및 20m 도로변 : 2m
3BL	3-1	용도	권장용도 : 건축법시행령별표1의 10호에 의한 업무시설 허용용도 : 유통상업지역내 설치가능한 용도 불허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5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16호 자동차관련시설 제19호 공공용시설 제12호 위락시설 * 판매 및 영업시설의 비율은 주차장을 제외한 연면적의 50% 를 초과할 수 없음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허용 : 600% 이하 - 권장용도가 주차장을 제외한 연면적의 20%이상을 차지하여야 하며 그 미만일 경우는 미준수 비율에 따라 용적률 패널티 부여 - 패널티량 = 허용용적률 × (20% - 권장용도 점유율(권장용도 준수면적 / 주차장을 제외한 연면적))
		높이	군용항공기지법상 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 적용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 - 40m도로 및 30m 도로변 : 3m - 보행자전용도로변 : 5m
4BL	4-1	용도	지정용도 : 건축법시행령별표1의 15호에 의한 주유소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의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허용 : 200% 이하
		높이	12m 이하

4)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고
-	지구단위 계획 구역전체	① 공개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제67조에 의한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공지 •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파대로변 결정도상에 표시된 곳에 설치하도록 할 것 - 결정도상에 위치권장이 되어 있는 경우는 가급적 공개공지의 이용성 증진을 위하여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 할 것 • 조성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파대로변은 결정도상에 제시된 폭 이상 조성하고, 송파대로명소화사업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조성하며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 - 지하철과 인접한 공지는 가급적 침상형으로 조성할 것 - 그 외 지역은 관련법규정에 의함 ②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경계선과 건축선 후퇴공간 사이에 생기는 공지 - 접한 보도와 높이차이가 없도록 할 것 - 대지로의 차량출입을 제외한 주차장, 담장, 계단 등 보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시설물 설치를 금지함(교목의 식재, 벤치 등의 휴게시설, 조명, 장식물 등은 설치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차량 진출입부분을 제외한 면적의 30%이내 일 것) - 보도와 연계하여 보행의 쾌적성 확보 및 가로 녹시율을 높일 수 있도록 조성할 것 	

○ 옥외광고물에 관한 결정조서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고
	지구단위 계획 구역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급적 지주식 통합형 간판의 형태로 설치를 유도 • 가로형 간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판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이는 위아래 창문 사이 벽체의 80%이내이고, 건물의 폭 이내로 부착하되, 1개 업소 간판의 최대 길이는 10m를 넘을 수 없으며, 2개의 기둥간격을 넘을 수 없음(기둥간격이 10m를 넘는 경우나 기둥이 없더라도 최대 10m를 넘을 수 없음) - 간판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적으로 문자형으로 하여야 하며 1층의 경우에 한하여 판류형으로 부착할 수 있음 - 부착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간판 교체 시에도 건축물의 외관에 손상이 가지 않을 방법을 선택 • 돌출형 간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판 부착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좌측 또는 우측 벽체의 모서리에 설치하되 1개소만 설치할 수 있음(다만 전면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길이가 20m를 넘는 경우는 좌측·우측에 각각 1개소만 설치할 수 있음) - 간판의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면에서 3m이상의 위치에서 최대 30m까지 허용하되, 1개 점포당 최대 3m 또는 1개 층고를 넘을 수 없으며, 연립형으로 설치하여야 함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고
	지구단위 계획 구역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출 길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벽면에서 돌출할 수 있는 길이는 최대 1m를 넘을 수 없음 - 간판의 두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명시설 설치를 감안한 두께이하로 하되 광고물의 표시는 좌우측 2면에만 표시할 수 있음 • 1층에 설치하는 돌출형 간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립형 돌출 간판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한하여 1층에 개별 광고를 할 수 있는 돌출형 간판을 부착할 수 있음 - 간판 면적 : 0.36㎡ 이내 - 돌출 길이 : 벽면에서 돌출 길이는 최대 1m를 넘을 수 없음 - 간판 두께 : 조명시설 설치를 감안한 두께이하로 하되 광고물의 표시는 좌우측 2면에만 표시할 수 있음 	

○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조서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고
-	장지천 북측 (활성화 및 전문상가 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동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차량출입불허구간이외의 구간에서만 이루어져야 함 - 단지 내부 및 진출입차량 동선은 최소 5m 이상의 회전반경 확보 - 차량진출입방향이 표시된 변에서도 다음의 구간에서는 차량 진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음. 다만, 대지변 길이의 협소 등으로 인해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교차로 단부로부터 가장 먼 곳에 설치하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폭 30m 이상의 도로변으로부터 40m 이내의 구간 b. 폭 20m 이상 30m 이내의 도로변으로부터 30m 이내의 구간 c. 버스정류장, 기타 승하차시설, 지하도입구, 횡단보도 전후 10m 이내의 구간 - 획지분할가능선에 의해 분할된 획지에 대하여도 위의 기준을 적용함 •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 20m 이상 도로변의 주차장 노출을 금지함(차폐식재 등을 통하여 시각적으로 차단할 것) - 지하주차장 램프는 주변동선과 상충되지 않도록 배치 • 보행동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보행통로의 포장은 인접가로의 보도 수준이상 재료로 포장하며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 - 공공보행통로에는 일반인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으며, 인접 공공보행통로와 연계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성 	

5)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특별계획구역 지정 목적

도면번호	명 칭	면 적	위 치	지 정 목 적
1	특별계획1구역	27,954㎡	장지동 229 일원	청계천이주 전문상가단지조성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2	특별계획2구역	13,303㎡	장지동 233 일원	
3	특별계획3구역	42,592㎡	장지동 409-1 일원	
4	특별계획4구역	191,709㎡	장지동 674 일원	민·관합동의 PF(Project Financing)방식을 통한 동남권유통단지 물류시설지 조성에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개발을 유도

- 제1종지구단위계획과의 관계
 - 구체적인 개발행위의 발생시 개발자와의 협의 등을 통해 상세한 계획안을 작성하고 이를 별도의 승인 과정을 거쳐 본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함
 - 특별계획구역내의 기반시설에 대해 계획안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기반시설계획을 변경하도록 하고 계획안의 변경에

- 따라 가구 및 획지계획을 포함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상세한 계획안의 작성시 다음 사항에 대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만, 불가피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안의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를 변경할 수 있음

위 치	항 목	계 획 내 용	비고
특별계획 1,3 구역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용도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 및 부대시설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외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변 : 3m(송과대로변 제외) 	
	공개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과대로변 : 결정도에 제시된 폭 이상 확보하고 보도와 일체형으로 조성하되 송과대로 명소화사업과 연계 될 수 있도록 조성할 것 	
	대지내통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지천 및 장지역과 보행이 연결될 수 있도록 공공보행통로(폭 6m이상) 계획 (특별계획3구역) 	
	옥외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형(판류형)광고물 부착 금지 	
	교통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계획1구역의 경우 30m도로변에서 하역 작업 방지를 위한 내부 차량동선 계획 ● 차량출입불허구간 : 도면참조 	
특별계획 2구역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용도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및 부대시설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외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변 : 3m 	
	옥외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형(판류형)광고물 부착 금지 	
	교통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출입불허구간 : 도면참조 	
특별계획 4구역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용도 : 관련법(화물유통촉진법 및 유통산업발전법) 등 상의 용도 (개발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설 및 그와 유사한 시설의 수용이 가능한 용도)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외(주차 전용건축물 설치시에도 타용도 불허) 	

구 공 고

◆ 광진구공고 제2006-109호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공사완료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05-64호 (2005.9.27)에 의거 고시한 광진구 화양동 1번지 일대 건국대학교의 도시계획 시설사업(학교) 공사완료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공고합니다.

2006년 3월 2일

광진구청장

1.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1번지 일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실시계획 변경 - 건국대학교 증축사업
3. 사업규모
 - 가. 사업 명칭 : 건국대학교 산학협동관 증축공사
 - 나. 사업대지면적 : 460,443.20㎡
 - 다. 사업 연면적 : 319,190.52㎡
 - 라. 사업변경 내용
 - 1) 건국대학교 산학협동관 증축공사
 - 지상 1층, 연면적 156.06㎡
 - 마. 주 용 도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교)
4. 사업시행자
 - 가. 시행자 :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 나. 주 소 :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번지
5. 사업시행기간 : 인가일로부터~2006.2.21

◆ 노원구공고 제2006-99호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실시계획변경인가 서류공람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648외 3필지

도시계획시설(학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건축허가(증축)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0조, 동법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서류의 공람공고 및 의견을 청취하고자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6년 3월 2일

노원구청장

1.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648외 3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 나) 사업의 명칭 : 은봉관 외3개동 증축공사 (본관동 외2개동 철거)
3. 사업시행규모
 - 가) 사업시행면적 : 76,485.00㎡
 - 나) 변경전(기존규모) : 본관동 외 9개동 (부속건물 4개동), 연면적 44,880.28㎡
 - 다) 변경후(증축 후) : 은봉관 외8개동 (부속건물 3개동), 연면적 65,085.31㎡
 - 라) 신청현황
 - 은봉관 : 지하2층, 지상8층, 증축면적 19,882.78㎡(별동증축)
 - 덕 관 : 지상6층/4,184.94㎡ → 지하1층, 지상6층/6390.54㎡ (증축 2,205.61㎡)
 - 인 관 : 지상5층/6,272.86㎡ → 지상5층/6344.47㎡(증축 71.61㎡)
 - 1공학관 : 지상5층/6,695.41㎡ → 지상5층/6784.46㎡(증축 89.05㎡)
 - 본관동 : 지상2층, 1,116.57㎡ → 철거
 - 연구동 : 지하1층, 지상2층, 1,222.64㎡ → 철거
 - 양수탱크(부속동) : 지상1층, 23.50㎡ → 철거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1) 성 명 : 학교법인 인덕학원
 - 2) 주 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648번지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1) 착수년월일 : 허가일(실시계획변경인가일)로부터 30일 이내
 2) 준공예정일 : 2008. 12. 30
 6. 위치도 및 인가도면 : 노원구청 건축과 비치도면과 같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 생략
 8. 공람공고 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이상
 ※ 관계도서는 노원구청(☎ 건축과 950-3390~3)에 비치하고 있으니 본 사업시행에 따른 의견을 공람 기간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양천구공고 제2006-85호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1. 우리구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양천구청 도시주택과(2650-3380)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6년 3월 2일
 양 천 구 청 장

가. 단계별집행계획 총괄표

(사업비 : 백만원)

시설별	시 행 기 간 별											
	계			1단계(1~3년차)			2-1단계(4~5년차)			2-2단계(6~10년차 이후)		
	건수	면적(m ²)	사업비	건수	면적(m ²)	사업비	건수	면적(m ²)	사업비	건수	면적(m ²)	사업비
계	6	6,860	10,715	3	4,323	6,640	2	745	495	1	1,792	3,580
도로	6	6,860	10,715	3	4,323	6,640	2	745	495	1	1,792	3,580

※ 양천구공고 제2005-663호(2006.1.5) 포함한 총괄표임

나. 단계별집행계획 조서(추가사항)

시설명	위 치 (사업명)	우선 순위	사업 기간	사업개요			사 업 비(백만원)						단계별	비고
				폭 (m)	연장 (m)	면적 (m ²)	총계	국비	지 방 비			민간		
									계	시비	구비			
도로	목2동 749-5 ~231-15	2	2007년	7~12	800	800	2,900	-	2,900	2,900	-	-	1단계	
"	신정동 576-3 ~406-1	3	2009년 이후	9	10	45	45	-	45	45	-	-	2-1단계	

다. 관계도면 : 생략(양천구청 도시주택과 비치도면과 같음)

◆ 구로구공고 제2006-115호

천왕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내 건축허가제한

현재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을 추진중인 천왕2지구에서 건물 신·증·개축, 용도변경,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 보다 많은 보상금 등을 노리는 악성투기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원활한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을 위해 건축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건축허가 제한을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2일

구 로 구 청 장

가. 건축허가 제한 근거

- 건축법 제12조 제2항(건축허가의 제한)

나. 건축허가 제한 목적

- 무주택서민을 위한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보상 등을 노린 악성투기행위방지, 사업시행시 철거해야 할 건축물 설치로 인한 국가적 자원낭비방지

다. 건축허가 제한기간

건축허가제한 공고일로부터 2년, 필요시 1년 연장(단, 예정지구 지정시까지 한함)

라. 건축허가 제한구역

- 지 구 명 : 천왕2지구
- 위치 및 면적 : 서울시 천왕동 일원 (278천㎡)
- 구역경계도면 : 생략(비치도면과 같음)

마. 건축허가 제한대상

※ 주민공람공고 개시일 이후 건축허가 신청 등 아래의 제한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모두 제한조치

- 1) 건축법 제8조(건축허가)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 2) 건축법 제9조(건축신고)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 3) 건축법 제14조(용도변경)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세대수 증가행위, 건

축물대장기재사항 변경 및 전환 포함)

- 4) 건축법 제15조(가설건축물)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 5) 건축법 제16조(착공신고 등) 규정에 의한 착공

바. 공고방법 : 시보게재, 구보게재, 구홈페이지에 게시

◆ 동작구공고 제2006-89호

상도제7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159-250번지 일대 상도제7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주민공람을 실시하며, 상도제7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 3월 2일

동 작 구 청 장

1. 공람기간 : 2006. 3. 2. ~ 2006. 3. 16.
2. 공람장소

가. 동작구청 도시관리과 (담당 ☎ 820-9179)

나. 상도제7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823-0487)

3. 공람내용

가. 상도제7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1)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내용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적(m ²)	비 고
신 규	상도제7구역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동작구 상도동 159-250번지 일대	53,244m ²	

2)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구 분	면 적 (m ²)			비 율 (%)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계		53,244	-	53,244	100.00	
용도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3,223	감)213	3,010	5.65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50,021	감)50,021	-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	증)50,234	50,234	94.35	

3) 정비계획(안)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적(m ²)	비 율(%)	비 고
합 계		53,244	100.00	
정비기반 시설	소 계	9,470	17.79	
	도 로	6,429	12.08	
	공 원	3,010	5.65	
	공공공지	31	0.06	
택 지 (획 지)	소 계	43,774	82.21	
	택 지1	38,762	72.80	조합원 및 분양아파트
	택 지2	3,650	6.85	임대아파트
	택 지3	563	1.06	상가
	택 지4	799	1.50	종교용지

나)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1) 도로

결정 구분	규 모				기 능	사용형태	연장 (m)	위 치		주 요 경과지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 점	종 점		
가정	대로	3	1	30	보조간선 도로	일반도로	237	상도동 159-8	상도동 211-454	상도2 지하차도	
신설	중로	2	1	15	국지도로	일반도로	130	상도동 159-8	상도동 159-388	산상도길	

결정 구분	규 모				기 능	사용형태	연장 (m)	위 치		주 요 경과지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 점	종 점		
신설	중로	2	2	12	국지도로	일반도로	120	상도동 159-388	상도동 159-282	남현교회	
신설	소로	3	1	6	국지도로	일반도로	75	상도동 159-358	상도동 159-132	현준빌라	
신설	소로	3	2	4	특수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144	상도동 211-445	상도동 204-206	삼성 농어원	

(2) 공원

결정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비 고
	명 칭	세 분류			
기 정	공 원	근린공원	상도동 산65-116	3,010	

다)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구역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 (동)					비 고
	명 칭	면적 (㎡)		계	존 치	개 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기 존	상도7구역 주택재개발	53,244	상도동 159-250번지일대	284	-	-	-	284	

(2)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역 구분		위 치	연면적 (㎡)	주된용도	건폐율 (%)	용적율 (%)	높이(m) 층수(층)
	명 칭	면적(㎡)						
신규	택지1	38,762	상도동 159-250일원	125,600 이하	분양아파트	25%이하	235%이하	46m이하 15층이하
	택지2	3,650	상도동 159-367일원	12,500 이하	임대아파트	25%이하	205%이하	46m이하 15층이하
	택지3	563	상도동 159-1	600.00	상 가	건축허가시관련법령적용		
	택지4	799	상도동 산64-92		종교용지	건축허가시관련법령적용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설비율(주택재개발) -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 80% 이상 - 세대당 전용면적 40㎡이하 : 임대주택세대수의 40% 이상 또는 전체세대수의 5% 이상 - 임대주택 : 전체세대수의 17%이하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건축법, 주택법등 관련법규에 의함					

라)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건립위치	부지면적(㎡)	동 수	연면적(㎡)	세대 수	세대규모(전용)	비고
상도동 159-367일원	3,650.00	1	12,426.62	161	31.61	
마)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기예상 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비고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자정고사일로 부터 4년 이내	상도구역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	현황: 524세대 계획: 937세대 (증) 413세대	홍수 피해 없으나 소방시설미비와 차량진입도로부족 사고위험 높음		
4. 정비계획결정도 및 기타 관계도서 : 공람장소에 비치			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리 위탁하고 같은법 제2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공 고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2006년 3월 2일 강 동 구 청 장</div>			
◆ 강동구공고 제2006-141호 도시공원시설 관리위탁 사항 명일근린공원내 강동테니스장을 『도시공						
1. 위탁시설						
시 설 명	위 치	면 적	시설내역			
강동테니스장	강동구 상일동 135(명일근린공원)	3,636㎡	테니스코트6면, 관리실1동, 주차장			
2. 위탁기간 : 2006.3.1~2009.2.28(3년간)						
3. 수탁자 : 생활체육 강동구 테니스연합회						

사업소고시

◆ 한강시민공원사업소고시 제2006-3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하천의 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6년 3월 2일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허가 받은 자		허가점용(사용)개요				허가 연월일
성명	주소	하천명 및 위치	점용(사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인천국제공항철도(주) 김윤기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414-204 인천국제공항철도빌딩	서울시계내 한강	선박1척 (부선1척)	마곡대교 건설공사	2006.2.21.~ 2006.12.31.	2006. 2. .

◆ 한강시민공원사업소고시 제2006-31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와 같이 하천의 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6년 3월 2일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허가 받은자		허가점용(사용)개요				허가 연월일
성명	주소	하천명	점용(사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서울지부 대표 : 류진수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 1058-1 동부A 102-1302	한강 (성산대교에서 가양대교사이)	모타보트3척	수상레저사업용 선박운항	2006.3.1~ 2006.12.31.	2006. 2. .

사업소공고

◆ 성동소방서공고 제2006-1호

소방시설업 신규등록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업을 등록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2일
성 동 소 방 서 장

등록번호(등록일자)	업종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비고
성동2006-1 (2006.2.23)	일반소방시설공사업 (전기분야)	주식회사 제아전설	이범택	서울특별시 성동구 홍익동 300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성동소방서 예방과(☎ 02-452-41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포소방서공고 제2006-3호

소방시설업 신규등록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업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2일
마 포 소 방 서 장

1. 등 록 번 호 : 제마포2006-3호
2. 업종(등급 및 분야) : 일반소방시설공사업
(기계)
3. 상 호 : 도합기공 주식회사
4. 대 표 자 : 한 기 돈(561201-1*****)

5. 법인등록번호 : 110111-2462309

6. 영업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66-8 5층

7. 등 록 일 자 : 2006년 2월 21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02-701-349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영등포소방서공고 제2006-2호

소방시설업 등록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업을 등록하고 같은 법시행규칙 제3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2일
영 등 포 소 방 서 장

연번	등록번호	업종(분야)	상호	대표자(주민등록번호)	소재지	등록일자
1	제영등포 2006-1호	전문소방시설 공사업	청호이엔지 주식회사	조희환 (580413-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산길4동 221-44 인의빌딩 503호(☎ 02-831-1752)	2006.2.24.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영등포소방서 예방과(☎ 02-2678-17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초소방서 공고 제2006-3호
소방시설업 신규등록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업을 등록하고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2일
서 초 소 방 서 장

등록번호	업종(분야)	상호(법인등록번호)	대표자(주민등록번호)	영업소재지	등록일자
제서초 2006-02호	전문소방시설 공사업	주식회사 제이원방재 (110111-3366170)	박 중 국 (660505-1*****)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851-8 3층 302호	2006. 2.27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초소방서 예방과(☎ 02-594-41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초소방서공고 제2006-4호
소방시설업 신규등록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업을 등록하고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2일
서 초 소 방 서 장

등록번호	업 종(분야)	상호(법인등록번호)	대표자(주민등록번호)	영업소재지	등록일자
제서초 2006-03호	일반소방시설설계업 (전기분야)	주식회사 일진지엔씨 (110111-2179160)	이 중 선 (620806-1*****) 임 석 재 (620814-1*****)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530-80	2006. 2.27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초소방서 예방과(☎ 02-594-41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 타

◆ 국방부고시 제2004-9-3호
실시계획승인(변경)

1.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시보 제2678호('06.1.19),
국방부 고시 제2004-9-2호
2. 위 관련 국방부 고시 제2004-9-2호의
고시를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
경고시합니다.

2006년 3월 2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시행자 : 국군체육부대장
2. 사업의 명칭 : 국방·군사시설 사업
3. 사업의 개요 : '04년 군사용 사유지 토지
매수
4. 시행기간 : '04. 7. 5~'06. 12. 31
5. 사업시행청과 그 주소
가. 시 행 청 : 국군체육부대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수성구
창곡동 사서함 122-16
전화 (02) 3400-6081
6. 토지의 세목
 - 당초 :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산228-50
번지의 1필지 5,463㎡
 - 변경 :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산211-15
번지 4,263㎡(불입 세목조서 참조)

변 경 토 지 세 목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당초)	지 목	공부면적 (당초면적) (㎡)	편입면적 (당초면적) (㎡)	현실 이용	용도지역 또는 지구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 내용	
								주 소	성 명	권리명	관계인
계		1필지 (2필지)		4,263 (5,463)	4,263 (5,463)						
1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산228-50	임 야	0 (1,200)	0 (1,200)	임야 및 건물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저축, 일부학교, 보전임지(공익), 허가구역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126	학교법인 정의학원 (공유자지분 69,666분의 51,419)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26	재단법인 태능푸른동산 (공유자지분 69,666분의 18,247)	푸른동산지분 가압류 (결정2000 카합1731)	문화 채청
										푸른동산지분 압류 (징세46100- 8797)	도봉 세무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당초)	지 목	공부면적 (당초면적) (㎡)	편입면적 (당초면적) (㎡)	현실 이용	용도지역 또는 지구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 내용	
								주소	성명	권리명	관계인
1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산228-50	임 야	0 (1,200)	0 (1,200)	임야 및 건물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저축, 일부학교, 보전임지(공익), 허가구역			푸른동산지분 압류 (세일13410- 3120) 푸른동산지분 가압류 (결정2003 카단19862)	노원구 세무1과 이용대
2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산211-15	임 야	4,263	4,263	임야 및 건물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내, 일부군사시설 보호구역, 보전임지(공익), 허가구역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369-1 현대A 11동 701호	박순태		

※ 1번(산228-50번지) : 산 228-50번지 1필지1,200㎡ 감소

※ 2번(산211-15번지) : 변경없음

◆ 동부경찰서공고 제2006-3호

관인 폐기 공고

서울동부경찰서군자지구대장의인의 관인
(일반사무용) 폐기사항을 사무관리규정 제
40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2일

광진경찰서장

1. 폐기 개시일자 : 2006. 3. 1
2. 관인 폐기 내역(승인인영) : 별첨

폐기관인인영



◆ 동부경찰서공고 제2006-4호

관인 재등록 공고

서울광진경찰서군자지구대장의인의 관인
(일반사무용) 등록사항을 사무관리규정 제
40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2일

광진경찰서장

1. 사용 개시일자 : 2006. 3. 1
2. 관인 등록 내역(승인인영) : 별첨

신규관인인영



◆ 동부경찰서공고 제2006-5호
관인 폐기 공고

서울동부경찰서중곡순찰지구대장의인의
관인(일반사무용) 폐기사항을 사무관리규
정 제40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2일
광진경찰서장

- 1. 폐기 개시일자 : 2006. 3. 1
- 2. 관인 폐기 내역(승인인영) : 별첨

폐기관인인영



◆ 동부경찰서공고 제2006-7호
관인 폐기 공고

서울동부경찰서광나루순찰지구대장인의
관인(일반사무용) 폐기사항을 사무관리규
정 제40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2일
광진경찰서장

- 1. 폐기 개시일자 : 2006. 3. 1
- 2. 관인 폐기 내역(승인인영) : 별첨

폐기관인인영



◆ 동부경찰서공고 제2006-6호
관인 재등록 공고

서울광진경찰서중곡순찰지구대장의인의
관인(일반사무용) 등록사항을 사무관리규
정 제40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2일
광진경찰서장

- 1. 사용 개시일자 : 2006. 3. 1
- 2. 관인 등록 내역(승인인영) : 별첨

신규관인인영



◆ 동부경찰서공고 제2006-8호
관인 재등록 공고

서울광진경찰서광나루순찰지구대장인의
관인(일반사무용) 등록사항을 사무관리규
정 제40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2일
광진경찰서장

- 1. 사용 개시일자 : 2006. 3. 1
- 2. 관인 등록 내역(승인인영) : 별첨

신규관인인영



◆ 동부경찰서공고 제2006-9호
관인 폐기 공고

서울동부경찰서자양순찰지구대장의인의
관인(일반사무용) 폐기사항을 사무관리규
정 제40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2일
광진경찰서장

- 1. 폐기 개시일자 : 2006. 3. 1
- 2. 관인 폐기 내역(승인인영) : 별첨

폐기관인인영



◆ 동부경찰서공고 제2006-11호
관인 폐기 공고

서울동부경찰서장인민원사무용의 관인(일
반사무용) 폐기사항을 사무관리규정 제40
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2일
광진경찰서장

- 1. 폐기 개시일자 : 2006. 3. 1
- 2. 관인 폐기 내역(승인인영) : 별첨

폐기관인인영



◆ 동부경찰서공고 제2006-10호
관인 재등록 공고

서울광진경찰서자양순찰지구대장의인의
관인(일반사무용) 등록사항을 사무관리규
정 제40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2일
광진경찰서장

- 1. 사용 개시일자 : 2006. 3. 1
- 2. 관인 등록 내역(승인인영) : 별첨

신규관인인영



◆ 동부경찰서공고 제2006-12호
관인 재등록 공고

서울광진경찰서장민원사무용의 관인(일반
사무용) 등록사항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2일
광진경찰서장

- 1. 사용 개시일자 : 2006. 3. 1
- 2. 관인 등록 내역(승인인영) : 별첨

신규관인인영



◆ 동부경찰서공고 제2006-13호
관인 폐기 공고

서울동부도보순찰대장인의 관인(일반사무용) 폐기사항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2일
광진경찰서장

- 1. 폐기 개시일자 : 2006. 3. 1
- 2. 관인 폐기 내역(승인인영) : 별첨

폐기관인인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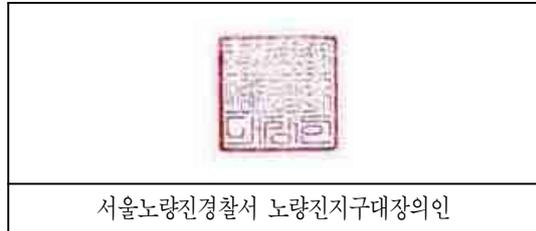
◆ 노량진경찰서공고 제2006-3호
관인 폐기 공고

서울노량진경찰서 노량진지구대장의인의 관인(일반사무용) 폐기사항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2일
동작경찰서장

- 1. 폐기 개시일자 : 2006. 3. 1
- 2. 관인 폐기 내역(승인인영) : 별첨

폐기관인인영



◆ 동부경찰서공고 제2006-14호
관인 재등록 공고

서울광진방범순찰대장인의 관인(일반사무용) 등록사항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2일
광진경찰서장

- 1. 사용 개시일자 : 2006. 3. 1
- 2. 관인 등록 내역(승인인영) : 별첨

신규관인인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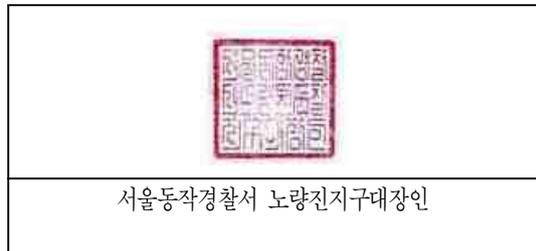
◆ 노량진경찰서공고 제2006-4호
관인 등록 공고

서울동작경찰서 노량진지구대장인의 관인(일반사무용) 등록사항을 사무관리규정 제 40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2일
동작경찰서장

- 1. 사용 개시일자 : 2006. 3. 1
- 2. 관인 등록 내역(승인인영) : 별첨

신규관인인영



◆노량진경찰서공고 제2006-5호
관인 폐기 공고

서울노량진경찰서 흑석지구대장의인의 관인(일반사무용) 폐기사항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2일
동 작 경 찰 서 장

1. 폐기 개시일자 : 2006. 3. 1
2. 관인 폐기 내역(승인인영) : 별첨

폐기관인인영



◆노량진경찰서공고 제2006-7호
관인 폐기 공고

서울노량진경찰서 상도지구대장의인의 관인(일반사무용) 폐기사항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2일
동 작 경 찰 서 장

1. 폐기 개시일자 : 2006. 3. 1
2. 관인 폐기 내역(승인인영) : 별첨

폐기관인인영



◆노량진경찰서공고 제2006-6호
관인 등록 공고

서울동작경찰서 노들지구대장인의 관인(일반사무용) 등록사항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2일
동 작 경 찰 서 장

1. 사용 개시일자 : 2006. 3. 1
2. 관인 등록 내역(승인인영) : 별첨

신규관인인영



◆노량진경찰서공고 제2006-8호
관인 등록 공고

서울동작경찰서 상도지구대장인의 관인(일반사무용) 등록사항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2일
동 작 경 찰 서 장

1. 사용 개시일자 : 2006. 3. 1
2. 관인 등록 내역(승인인영) : 별첨

신규관인인영



◆노량진경찰서공고 제2006-9호
관인 폐기 공고

서울노량진경찰서 대방지구대장의인의 관인(일반사무용) 폐기사항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2일
동 작 경 찰 서 장

- 1. 폐기 개시일자 : 2006. 3. 1
- 2. 관인 폐기 내역(승인인영) : 별첨

폐기관인인영



◆노량진경찰서공고 제2006-11호
관인 등록 공고

서울동작경찰서 남성지구대장인의 관인(일반사무용) 등록사항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2일
동 작 경 찰 서 장

- 1. 사용 개시일자 : 2006. 3. 1
- 2. 관인 등록 내역(승인인영) : 별첨

신규관인인영



◆노량진경찰서공고 제2006-10호
관인 등록 공고

서울동작경찰서 대방지구대장인의 관인(일반사무용) 등록사항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2일
동 작 경 찰 서 장

- 1. 사용 개시일자 : 2006. 3. 1
- 2. 관인 등록 내역(승인인영) : 별첨

신규관인인영



◆노량진경찰서공고 제2006-12호
관인 등록 공고

서울동작경찰서 사당지구대장인의 관인(일반사무용) 등록사항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2일
동 작 경 찰 서 장

- 1. 사용 개시일자 : 2006. 3. 1
- 2. 관인 등록 내역(승인인영) : 별첨

신규관인인영



◆노량진경찰서공고 제2006-13호
 관인 폐기 공고
 서울노량진경찰서장 민원사무용의 관인(일반사무용) 폐기사항을 사무관리규정 제 40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2일
 동 작 경 찰 서 장

- 1. 폐기 개시일자 : 2006. 3. 1
- 2. 관인 폐기 내역(승인인영) : 별첨

폐기관인인영



◆노량진경찰서공고 제2006-15호
 관인 폐기 공고
 서울노량진경찰서방법순찰대장의 관인(일반사무용) 폐기사항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2일
 동 작 경 찰 서 장

- 1. 폐기 개시일자 : 2006. 3. 1
- 2. 관인 폐기 내역(승인인영) : 별첨

폐기관인인영



◆노량진경찰서공고 제2006-14호
 관인 등록 공고
 서울동작경찰서장 민원사무용의 관인(일반사무용) 등록사항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2일
 동 작 경 찰 서 장

- 1. 사용 개시일자 : 2006. 3. 1
- 2. 관인 등록 내역(승인인영) : 별첨

신규관인인영



◆노량진경찰서공고 제2006-16호
 관인 등록 공고
 서울동작경찰서방법순찰대장의 관인(일반사무용) 등록사항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2일
 동 작 경 찰 서 장

- 1. 사용 개시일자 : 2006. 3. 1
- 2. 관인 등록 내역(승인인영) : 별첨

신규관인인영



◆노량진경찰서공고 제2006-17호
관인 폐기 공고

서울노량진경찰서 신길지구대장의 관인(일반사무용) 폐기사항을 사무관리규정 제 40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2일
동 작 경 찰 서 장

1. 폐기 개시일자 : 2006. 3. 1
2. 관인 폐기 내역(승인인영) : 별첨

폐기관인인영



◆노량진경찰서공고 제2006-19호
관인 폐기 공고

서울노량진경찰서 상도5파출소장의 관인(일반사무용) 폐기사항을 사무관리규정 제 40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2일
동 작 경 찰 서 장

1. 폐기 개시일자 : 2006. 3. 1
2. 관인 폐기 내역(승인인영) : 별첨

폐기관인인영



◆노량진경찰서공고 제2006-18호
관인 폐기 공고

서울노량진경찰서 신흥지구대장의 관인(일반사무용) 폐기사항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2일
동 작 경 찰 서 장

1. 폐기 개시일자 : 2006. 3. 1
2. 관인 폐기 내역(승인인영) : 별첨

폐기관인인영

